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 연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 연구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 연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1.

연구수행기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고영신(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곽정란(대구대학교, 박사과정)
김승엽(장애인센터 ‘함께사는세상’ 교육센터, 소장)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임소연(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최희정(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정신지체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이용당하거나,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일어난 경우에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정신지체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가해 당사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사 및 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저지른 가해자에게 경미한 처벌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신지체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관련 연구와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따른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를 보면,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폭넓은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정신지체인의 권리 중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시설 장애인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사례의 개요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종종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설에서의 폭력 사건, 보조금 착취 사건, 성적 학대 사건 등의 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시라카와 육성원(白河育成園)’과 같은 일반인들의 눈이 닿지 않는 폐쇄적인 생활 장소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들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고 문제의 심

각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태도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법률에 존재하는 관련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국가(정부, 법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의 존재를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반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에 판례에 나타난 관련 근거 법령 및 인권침해 사례를 검토해 보면, 판례들이 관련 실정법이 없는 경우라도 헌법 조항이나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 원리를 통해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장애인이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관련 법령으로는 적법절차의 원칙,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재활법, 미국장애인법,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 등이 있다. 이 중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재활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치료 등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에게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치료·서비스·재활훈련을 제공하는 시설, 주거, 교육, 기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적 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판례로는, 정신질환과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보호)와 재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인 *Wyatt v. Stickney* 판결, 정신지체 아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Mills v. Board of Education of District of Columbia* 판결, 주정부의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도 미국장애인법이 주정부로 하여금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Olmstead v. L. C. & E. W.* 판결, 비자발적 시설 수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Youngberg v. Romeo* 판결 등이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로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일련의 부산고등법원 판결, 성폭력 사건에서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연령을 중요시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노에 할아버지’ 사건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정신지체인의 대출 계약을 무효로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 등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현행 법률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영유아보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병역법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현행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교육, 보호, 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고 관할 부처가 서로 다른 관계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신지체인에 대한 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도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포함시켜 동 법을 장애인 관련 통합 법률로 개정하거나 현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에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중 어느 정도 자기결정 능력이나 자립생활 능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시설 밖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각 사람의 기회 균등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전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정신지체인의 보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전화, 내방,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정신지체인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 사례 180건이었다. 이 180건을 다시 분석해 유형화해 본 결과,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시설입소문의), 노동권,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권리, 교육권, 모·부성권(자녀를 양육할 권리) 순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7가지 유형 중에서 사례 수가 최소한 10건을 넘는 유형은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총 159건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사례 159건 중에서 중복 차별을 받은 경우를 고려하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내담자는 13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1.1%, 여성이 47.4%,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5%이었다. 20세 미만은 22.9%였고, 20세 이상은 54.2%이었다. 또 생계비 수급자(21.4%)보다는 비수급자(40.5%)가 더 많았다.

상담 의뢰인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68.0%이며, 나머지는 이웃 18.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9.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가 상담을 의뢰한 경우는 겨우 1.5%이었다.

의사소통 가능 여부의 경우, 79.4%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20.6%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의 조작적 정의는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신변처리 가능 여부의 경우, 92.4%가 스스로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7.6%는 신변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여기에서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다’의 조작적 정의는 혼자서 대소변 등의 처리가 가능하고 먹거나 입는 것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26.0%이고, 취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37.4%이었다. 전체 131명 중 미혼이 72.5%, 결혼(동거 포함) 중인(혹은 했던) 사람은 22.1%이었다. 미혼이 아닌 사람 중에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36.1%로 드러났다.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장애 유형은 정신지체가 69.2%, 지체장애가 23.1%, 뇌병변장애가 7.7%이었다.

재산권 침해 유형으로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상 침해를 받은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횡령당한 경우가 22.9%, 임금 착취를 당한 경우가 18.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사유재산, 보험금, 유산에 관련한 피해가 있었고, 보험가입 제한이나 보상금 제한 등의 보험 관련 권리 침해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정신지체인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신지체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 자동차세나 전화세 감면 등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장애수당이나 생계비 등을 빼앗기는 정신지체인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들어온 사례들 중에는 보호를 자처한 가해자들이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정신지체인의 생계비를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는 가족·친인척과 업주가 동일하게 26.7%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웃이 15.0%, 모르는 사람이 13.3%이었다.

생계비나 장애수당 등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52.7%이고 업주가 36.8%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15.8%에 그쳤다.

장애 특성 때문에 이들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특히 더 심각하게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축사, 양계장, 김 양식장 등에서 일했던 정신지체인들의 임금에 대한 침해 사항을 보면,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가 절반이 넘는 60.9%로 드러났고, 현금·현물 등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단지 39.1%뿐이었다.

신체자유권의 침해 사례는 총 53건이었다. 이 중에서 가정폭력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이 24.5%, 학교폭력이 20.8%, 직장 내 폭력이 15.1%, 기타 폭력이 5.7%로 나타났다.

가해자로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34.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직장 관계자가 17.0%, 모르는 사람이 14.1%, 교우가 13.2%, 교직원이 11.3%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얼굴을 안다고 해도 피해자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경우이다.

침해 유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 중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실태가 드러나기가 더욱 어려워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사는 정신지체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삶의 터전인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신체적 폭력으로 61.1%나 차지하였다. 그리고 언어적·정서적 폭력과 방임이 각각 16.7%, 성적 폭력이 5.5%이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16.7%가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신하거나 도망했다는 사람이 11.1%이었다. 그러나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경우가 72.2%로 제일 많았다.

결혼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33.3%이었고, 55.6%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가정폭력의 피해 당시 당사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경우에 이 피해자와 당사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당사자의 자녀인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16.7%는 부모가 또 다른 피해자라고 답하였는데, 사례 중에는 남편에게 정신지체인 어머니가 같이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그 외에 형제자매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강간이 61.5%로 제일 많았고, 그리고 성추행 38.5%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69.2%이고, 2명인 경우는 7.7%이며, 3명 이상인 경우도 23.1%나 되었다. 그리고 성폭력을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69.2%, 1회인 경우는 30.8%이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유인책으로 현금(21.4%)이나 현물(14.3%)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냥 납치하는 경우도 7.1%이었으며, 알 수 없다는 사례가 제일 많아 35.7%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20세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이 15.4%, 10세 이상~20세 미만이 7.7%, 알 수 없다는 경우가 38.5%이었다.

학교폭력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이 76.9%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왕따’)가 15.4%, 언어폭력이 7.7%로 나타났다. 신체자유권 침해의 다른 유형처럼 학교에서도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당한 폭력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87.5%,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12.5%로 나타났다. 직장에서도 신체적인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사례 중에서, 정신지체인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업의 유형은 농·임·어업으로 47.8%이었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이 39.1%이었으며, 판매직·서비스직은 13.0%에 그쳤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지체인들은 일의 성격상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반복적인 노동이 대부분인 직종에 몰려 있다.

취업 기간에 있어서는 1년 이상~5년 미만과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각각 26.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취업 기간을 모른다는 비율도 26.1%였고, 1년 미만이 13.0%, 10년 이상이 8.7%를 차지하였다.

취업 중에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는 경우는 39.1%에 불과하였고, 60.9%가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 있는 상담 중에는 짧게는 몇 년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입사 시 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44.4%이었다. 그리고 모른다는 사람은 55.6%이었다. 여기에서 ‘모른다’라는 답의 의미는 입사 시 업주가 당사자에게 임금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에게는 고지를 했으나 보호자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거나 하는 상황일 경우가 많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지체인이 살기 힘든 현실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들을 입소시키고자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문의하고 있다.

시설입소 문의는 전체 인권침해 사례 건수 159건 중에서 15.7%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분석한 인권침해 사례 유형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시설입소를 문의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76.0%로 가장 많았고, 당사자가 문의한 경우는 없었다. 입소를 문의한 시설 종류로는 생활시설이 100.0%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담 의뢰인이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정신지체들 중에서 시설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이었다. 시설입소 문의는 돌보던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형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생계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모나 가족의 장애 때문에 돌보기 힘든 경우, 교육·치료 등이 가능한 시설을 문의하는 경우, 폭력 때문에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연구자들이 인권침해 피해자인 정신지체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참여자로는 159건 중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고 그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의 분석이 가능한 3가지 유형(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43건을 선택하였다. 면접 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의 침해 정도, 대응 과정 및 현재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지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에 대한 침해 유형으로는,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중 한 가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한 비율이 51.1%이며,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중 두 가지 이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한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한 가지의 권리 침해 중에서는 신체자유권의 피해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권 9.3%, 노동권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는 재산권과 신체자유권의 침해가 16.3%, 신체자유권과 노동권의 피해가 16.3%로 나타났으며, 재산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동시에 당한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모두를 침해당한 비율이 14.0%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중·삼중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신체자유권의 침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지체인의 신체가 인권침해의 공간이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산권 측면에서의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을 받았다가 37.2%로 나타났으며, 받지 않았다가 25.6%, 모른다가 37.2%이었다. 이는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신지체인의 기초적인 생계조차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보조금 관리는 누가 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계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31.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친인척이 관리하고 있다가 12.5%, 이웃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각각 6.3%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인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뜻대로 정부보조금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뜻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분만 본인 뜻대로 사용했다가 18.8%, 다른 사람이 관리는 했지만 본인 뜻대로 사용하였다와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서 사용했다가 각각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정부보조금 조차도 정신지체인 본인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신지체인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입힌 명의도용과 관련한 피해 내용은 휴대전화와 관련한 피해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의 이중피해가 27.3%, 부동산, 신용카드 피해가 각각 9.1%, 기타가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을 한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가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관계자, 친구가 각각 18.2%, 친인척, 이웃, 모르는 사람이 각각 9.1%이었다. 이것으로 재산권 침해 역시 정신지체인과 대인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반복 피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 피해가 없었다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한 사람에 의한 반복 피해를 입었다가 36.4%, 2인 이상의 반복 피해가 있었다가 9.1%,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가 9.1%로 나타났다. 재산권의 경우 반복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한 번의 피해라도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지체인의 재산(신용도 포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버려, 더 이상 재산권의 피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명의도용 외의 재산상 피해의 내용은 보상금 피해와 기타 피해가 각각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의 반복 피해 여부는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입은 정신지체인 중 반복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7%로 나타났으며, 동일인에 의해 반복 피해를 입은 경우가 56.8%이고, 2인 이상에 의한 반복 피해의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학대와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학대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게 되거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자유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정신지체인 역시 이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이 1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지체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라는 응답이 13.5%, 학교가 2.7%, 파출소가 2.7%이었다. 인권침해가 일어난 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가정과 직장 두 곳에서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비율이 10.8%로 나타났고, 학교와 기타가 8.1%로 나타났으며, 가정과 지역사회 내(이웃), 직장과 학교가 각각 2.7%로 나타났다.

신체자유권의 침해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 혈연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관계자라는 응답은 24.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13.5%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는 응답이 5.4%, 이웃이라는 응답이 2.7%이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로 가족과 이웃이라는 응답이 5.4%, 이웃과 모르는 사람, 직장 관계자와 같은 학교 친구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각각 2.7%로 나타났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체자유권 침해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이중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2%이었다. 그 외에 기타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 학교폭력과 기타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 사람이 2.7%로 나타났다.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직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농업, 어업 및 축산업 단순근로자에 종사하는 사람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40.0%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에 종사한다는 사람은 6.7%이었다. 이처럼 직업 분포가 다양하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에 유입된 정신지체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4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의라고 대답한 사람과 강제에 의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26.7%이었다. 노동조건에 관한 사전 고지 내용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53.3%로 나타났으며, 임금에 대해서만 들었다는 사람이 33.3%,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3.3%이었다. 이는 정신지체인은 노동조건에 대해 말해 줘도 모르는 존재라는 낮은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 기간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3%,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3%, 5년 이상~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이 노동권의 피해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과 관련하여 강압적 요소가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응답한 사람이 8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이었다.

노동을 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식주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가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의식주와 현금을 제공받았다는 13.3%이었다. 현물 제공을 받았다고 현금과 현물을 제공받았다는 각각 6.7%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접근한 정신지체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인이 진정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노동의 대가로 의식주, 현물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긴급출동 SOS 24’의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의 짓밟힌 50년’과 같이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의식주만 제공받으면서 학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해를 입은 후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가 86.7%로 나타났으며, 일을 계속 한 비율도 13.3%이었다. 피해를 입고도 일을 계속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퇴직 시에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로는 제3자의 개입 과정에서 그만두었다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그만 두었다와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만두었다가 각각 7.7%이었다. 피해를 입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 두게 된 100%가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만 두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의 정신지체인의 감정적 수용 상태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화가 났다’가 20.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가해자가 미웠다’가 18.6%, ‘죽고 싶었다’가 16.3%, ‘슬펐다’가 11.6%, 기타가 7.0%이었다. 이는 ‘죽고 싶었다’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대부분의 정신지체인이 극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경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죽고 싶었다’는 감정 수용 경험은 정신지체인이 사회적 타살을 경험한 것인 것이다.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정신지체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았다가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위사람에게 알렸다가 32.6%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7.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망갔다가 4.7%, 신체적으로 저항했다가 2.3%, 기타가 2.3%이었다. ‘참았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학대와 실패를 반복해 겪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학대에 대한 무기력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무관심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알려 주었다가 25.6%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가 20.9%,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해 주었다가 4.7%이었다. 그 외에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경우가 4.7%, 이야기는 들어 주었지만 별 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경우가 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위 사람의 반응 중에 무관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일종의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방관 역시 자기가 돕지 않아도 누군가가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의 분산과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한다면 나도 역시 그런 사태를 위급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매성과 남들이 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평가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갈 데도 없는 불쌍한 정신지체인을 먹여 주고 재워 줬는데, 그 사람을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평가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 후 대응 시점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진 후에야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가 48.8%로 가장 많았고, 1년이 지난

후가 2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가 발생한 즉시라고 한 경우는 16.3%,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0%이었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았다가 32.6%로 가장 많았고, 법적지원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다가 16.3%로 두 번째로 많아서, 지원이 없었다고 응답한 11.6%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정신지체인이 피해 상황으로부터 구조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권 피해의 일부 사례와 같이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8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20.0%이었다. 이처럼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이 높은 것 역시 피해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측면에서, 사건 해결 결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나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이 23.3%,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합의나 보상과 함께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7.0%,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7.0%, 전학을 잤다는 응답이 4.7%, 모른다는 응답이 2.3%이었다. 합의나 보상, 처벌 등의 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민간 차원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상체계와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피해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가 25.6%로 가장 많았고, 후유증이 없다는 23.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있다가 18.6%,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이 있다가 14.0%, 신체적 후유증이 있다가 11.6%, 신체적·경제적 후유증이 있다가 7.0%이었다. 이는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의 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이 극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후유증과 경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관리와 금전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정신지체인 관련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대응방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24일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에는 정신지체인 그룹홈 및 사업장 운영자 1명, 특수학교 교사 1명, 정신지체인 부모 2명이 참여하였다. 면접은 사전에 준비한 면접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다음은 초점집단면접에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은 외관상 다른 점이 드러나지 않아 장애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못하여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비장애인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대하게 되며, 당사자 또한 차별받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정신지체인은 가정에서부터 인격적인 대우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인이더라도 반말을 한다. 일상적인 차별대우가 정신지체인에

게도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정신지체인이더라도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보호작업장은 2년 과정인데,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작업 능력이 있는 정신지체인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정신지체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을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하지만, 정신지체인은 장애 특성상 쉽지가 않다.

만약 취업을 해도 3개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 보통 직업재활을 이야기할 때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통합 취업을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투자하면 120%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신지체인들 중에서 기능이 좋은 사람이라도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운영자들이 싫어한다. 더구나 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가 있으면 시설에서 생활하지 왜 중증장애인이 일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신지체에 대한 인권 수준은 장애인 인권 중에서 제일 최하위이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정신지체에 대한 정책은 없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도 다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장애인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보다는 훈련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재활시설조차도 3년 이상이면 다닐 수가 없다.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일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배우고 나와도 일할 곳이 없다.

특수학교를 졸업해도 결국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갈 곳을 고민하고 찾아야 될 뿐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립지원센터 등에서 졸업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는 교사와 부모만 고민하고 있다. 대다수가 부모들이 모은 돈으로 보호작업장을 만드는데, 돈 문제와 마음고생이 심하다. 더 심각한 것

은 정신지체인이 나이를 먹으면 더 능력이 떨어지니까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운동이 필요한데, 정신지체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단체도 없다. 그래서 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정신지체인 당사자 단체 뿐 아니라 정신지체인 지원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생각할 때,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본다. 대다수가 정신지체인에 대해 모르고, 설사 아는 사람이더라도 관심이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특수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너무 특수하게 생각하고, 약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특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정신지체인이 방기되는 것이다.

셋째, 정책 자체가 성과와 업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건화되어 자주 보도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예산 문제로 돌려 버린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지체에 관련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기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우면 공무원에게 가시적인 업적도 생기는데, 정신지체인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센터가 있듯이, 정신지체인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인권, 고용, 주거 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가족을 포함한 서비스 및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정신지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기도 하고 또 가정 형편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정신지체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 인권 법률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연구서는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인권 규약들 하에서 정부들의 최소한의 핵심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연구서가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권리 중에서도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a)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와 (b) 장애에 근거한 차별의 방지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와 독립과 사회 통합의 권리를 의미한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지체인은 개별화된 치료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모든 정신지체인의 치료는 각 개인의 자율성과 기능의 유지·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독립과 사회 통합의 권리는 모든 정신지체인은 그의 건강 욕구와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에 적절한, 제한이나 참견을 최소화하는 치료로, 최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리이다.

차별이 방지되려면, 특별 보호 또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법률 하에서의 동등한 보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하며, 특정인과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맞추기 위하여 장치·서비스·시설을 제공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실천이나 과정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때 정부가 적절한 정당한 절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신보건 법률에서 차별 방지를 적용하자면, 차별에 대하여 정신지체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가 필요하다. 피해 유무를 떠나 정신지체인 등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많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후견인의 부적당한 활용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많이 있다. 그 밖에, 시설, 프로그램 및 관청으로부터 기금을 제공받는 계약자가 증진시켜야 할 정신지체인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본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본 보고서에서는 또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의 자각과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선,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법률·실천은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을 증가시키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데,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은 정신지체인의 권리의 실현과 강조를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신지체인이 이용 가능한 최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지체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하여 일하는 직원과 자원을 증가시켜야 하며,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통제하는 옹호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모든 옹호 노력에 있어서의 소비자 참여가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은, 지역에 의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동시에, 소비자·옹호자·정부가 혁신적이고 권리 지향적인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의 이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정신지체인 권리의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것의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와 NGO는 지역에 기반을 둔 옹호 조직, 특히 소비자가 통제하는 옹호 조직과 정신지체인의 가족·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조직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법적 보장의 권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지체인이 그동

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새로운 법률은 인권을 이행하는 행동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권리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정신지체인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및 정부 정책·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정신지체인과 그 옹호자들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포괄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생각할 때, 정신지체인을 위협으로부터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장애인 모두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할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 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연구 요약	v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II. 문헌의 검토	7
1. 정신지체인의 인권 관련 연구	9
2. 국내·외 정신지체인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관련 판례	15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관련 근거 법령 및 인권침해 사례의 검토 ...	15
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법령의 검토	31
3. 결론	39
III.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43
1. 연구 방법	45
1) 연구 설계	45
2) 조사 대상 사례	45
3) 자료 분석	45
2. 연구 결과	46
1) 조사 대상 내담자의 일반적 현황	46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52
3) 교육권 침해 사례	54
4) 모·부성권 침해 사례	55
5) 재산권 침해	56
6) 신체자유권 침해	62
7) 노동권 침해	74

8)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의 침해(시설입소 문의)	82
IV.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심층 분석	89
1. 연구 방법	91
1) 연구 설계	91
2) 조사 참여자	91
3) 면접	91
4) 자료 분석	92
2. 연구 결과	92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2
2) 재산권 침해	95
3) 신체자유권 침해	98
4) 노동권 침해	102
5) 대응 과정	108
6) 현재 상황	114
V. 정신지체인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117
1. 연구 방법	119
2. 연구 결과	119
1) 현 상황의 파악과 문제의 제기	119
2) 대안 제시	123
VI. 논의	125
1. 연구 결과의 설명 · 의미	127
2. 권리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 과제	130
1)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 리	130
2) 차별의 방지에 대한 권리	132

3) 그 밖의 권리(정신지체인 클라이언트의 권리)	134
3. 권리 증진을 위한 행동 방침	135
1) 정보의 수집과 보급	135
2) 자원을 증가시키고 우선순위를 매김	136
3)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137
4) 모델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과정	137
5) 옹호	138
6) 법률 등의 개선 방안	141
7) 그 밖의 행동 방침	142
 VII. 결론	 145
 참고문헌	 151
 부록	 159
부록 A	161
부록 B	167

표 목차

<표 1> 정신지체인의 일반적 현황	48
<표 2> 재산권 침해 유형	56
<표 3> 재산권 침해 가해자	58
<표 4> 정부보조금 관리자(1)	59
<표 5> 취업 중 임금 수령 여부	60
<표 6>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1)	62
<표 7> 신체자유권 침해자(1)	63
<표 8> 가정폭력의 유형	64
<표 9>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	65
<표 10>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의 여부	65
<표 11> 가정폭력 피해 시 다른 피해자 유무	66
<표 12>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	66
<표 13> 성폭력의 유형	67
<표 14> 성폭력 가해자의 인원	68
<표 15> 성폭력 피해 횟수	68
<표 16> 성폭력을 위해 취한 유인 방법	69
<표 17> 성폭력 첫 피해 발생 시기	69
<표 18>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부모의 태도	70
<표 19> 학교폭력의 유형	71
<표 20> 직장 내 폭력 유형	72
<표 21> 직업의 유형(1)	75
<표 22> 취업 기간	75
<표 23> 임금 수령 여부	76
<표 24> 입사 시 약속된 임금과의 차이	77
<표 25> 노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유무	77
<표 26> 입소 문의자	83

<표 27> 입소를 문의한 시설 종류	84
<표 28> 시설입소 경험 유무	84
<표 29> 시설입소를 문의한 상담 내용	85
<표 30> 면접지침의 구성 내용과 문항 번호	92
<표 31> 조사 참여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93
<표 32> 인권침해 유형	94
<표 33>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	95
<표 34> 정부보조금 관리자(2)	96
<표 35> 정부보조금의 사용 방식	97
<표 36> 명의도용 피해의 내용	97
<표 37> 명의도용자	98
<표 38> 명의도용의 반복 피해 여부	98
<표 39> 명의도용 외의 재산상 피해 내용	99
<표 40> 신체자유권 침해의 반복 피해 여부	99
<표 41> 신체자유권 침해 장소	100
<표 42> 신체자유권 침해자(2)	101
<표 43>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2)	102
<표 44> 직업의 유형(2)	103
<표 45> 일을 하게 된 경위	103
<표 46> 노동조건에 관한 사전 고지 내용	104
<표 47> 노동 기간	104
<표 48> 노동에 관련된 강압적 요소 유무	104
<표 49> 업무 이외의 강제 노동의 내용	105
<표 50> 노동의 대가의 내용	106
<표 51> 대가로 받은 현금의 액수	106
<표 52> 피해 후 퇴직 여부	107
<표 53> 퇴직 시 본인 의사 여부	107
<표 54> 퇴직금 수령 여부	108

<표 55> 피해자의 느낌	108
<표 56> 피해 시 대응 방식	109
<표 57> 피해 시 주위 사람들의 반응	110
<표 58> 피해 후 대응 시점	111
<표 59> 문제해결 과정에서 받은 지원의 종류	112
<표 60>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여부	113
<표 61> 분리 조치 후 가해자에게로 돌아갔는지의 여부	113
<표 62> 가해자에게 돌아간 이유	113
<표 63> 사건의 해결 결과	114
<표 64> 피해 후유증	115

그림 목차

<그림 1> 2000년 장애인 인권침해 신문 보도 건수	11
<그림 2> 2000년에 보도된 범죄·침해의 분류	12
<그림 3> 연도별 ‘지적장애 관련’ 보도 기사 건수	13
<그림 4> 연도별 보도된 실 사건 수	14
<그림 5> 조사 대상 사례	4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정신지체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이용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더구나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명의도용에 의한 재산피해를 당하거나, 현행범이 아님에도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되기도 하고, 명백한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술능력과 자기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 결과 초래되는 재산적 피해와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강제결혼·강제불임 등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남성 정신지체인은 아무런 증거 없이 범죄나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안전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노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거나, 어찌다가 노숙인 쉼터나 청소년 쉼터 등에 입소하더라도 장기간 머무를 수 없어 여러 쉼터를 전전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구결행위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신지체인이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권상담을 통해, 8년에서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갈취당한 사례 등을 접하며, 보호조치 및 피해 당사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개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지체인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학대 및 수급권 갈취 등의 문제는 자기보호가 어려운 정신지체라는 장애 특성상, 그 피해 상황이 장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제보자가 없으면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기도 어렵고, 설령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이후 대응이 힘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인권침해의 부당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인권침해가 장기간 일어나더라도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 또한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도 되고 보호를 명분으로 감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일반인의 이러한 인식은 가해 당사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대신 “좋은 일 했는데, 왜 그러냐?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수사 및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저지른 가해자라도 경미한 처벌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신지체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원칙적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연구 주제이며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의 관련 연구와 법률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해,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그 대응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둘째, 상담으로 접수된, 지역사회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화한다.

셋째, 심층면접을 통하여 각 유형에 따른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넷째,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지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II. 문헌의 검토

1. 정신지체인의 인권 관련 연구

1970년대 이래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몇 가지 권위 있는 선언이 있어 왔다.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위한 옹호 전략을 채용한 정신지체인 및 일반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들은,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련된 특별 규정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만드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권위 있는 성명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일해 왔던 것이다(Slye, 2003).

1975년에 유엔은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에서 모든 장애인이 국제 인권 법률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993년 ‘세계 인권 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는 유엔이 ‘빈 선언(Declaration of Vienna)’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보편적이며, 그러므로 전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다’고 재차 단언함으로써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빈 선언에 응하여, 유엔 총회는 1994년에 ‘장애인을 위한 기회 균등화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정신지체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 표준을 공표한 것이었다(Yale Declaration, 2003).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폭넓은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재권·고은(2002)이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 정신지체인에 관련된 규정을 소개하였으나, 정신지체인의 권리 중 하나로서 성적 권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외국에서도 French(1986)가 재정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에서 정신지체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비용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이 역시 정신지체인의 치료 권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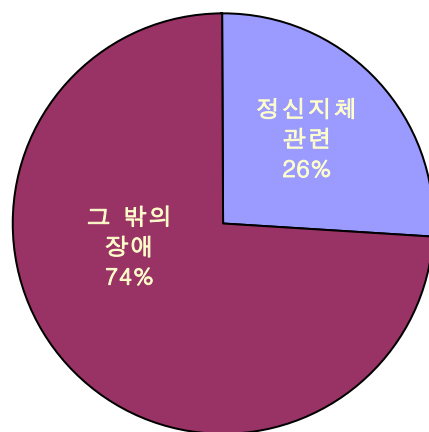
Hayden(1998)이 정신지체인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시설 장애인의 시민권 소송에 관한 연구였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04년 한 해 동안 연구소 인권국에 접수된, 정신지체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상담 908건을 유형화하여 차별의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응 과정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폭넓은 연구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특성을 보면, 인권침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지역 내에서 발생되며, 정신지체인은 부모에게서조차 버려지거나 자식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선행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정신지체인은 장애 특성상 문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도 못해, 제보자가 있어야만 침해 상황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정황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면, 정신지체인에게는 선택과 자기결정이 존중되는 최소한의 여건도 주어지지 않으며, 정신지체가 있으면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대응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무조건 생활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현실이다(김희선, 2004).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사례의 개요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종종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설에서의 폭력 사건’, ‘보조금 착취 사건’, ‘성적 학대 사건’ 등이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신문 기사화된 자료를 분석한 ‘현대 사회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1996~2000년에 보도된 신문기사의 분석을 통해서’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堀江まゆみ, 2002).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인을 고용하는 ‘우량기업’에서 반복해서 일어난 폭력, 성적 학대, 금전 착취를 다룬 ‘성자의 행진’이라는 드라마가 1998년에 제작·방영되어 일반 사회를 향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TBS系 金曜ドラマ 『聖者の行進』, 연도불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2000년에 발생한 사건은 소규모 작업소의 이용자가 소장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전착취를 당한 사건이었다.

2000년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보도는 총 1,120건이었으나, 그 중 정신지체인 관련 보도 기사는 402건이었다(그림 1). 이 보도 건수는 신문 기사 1건을 빈도 하나로 계산한 것이고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 신문사에 중복 보도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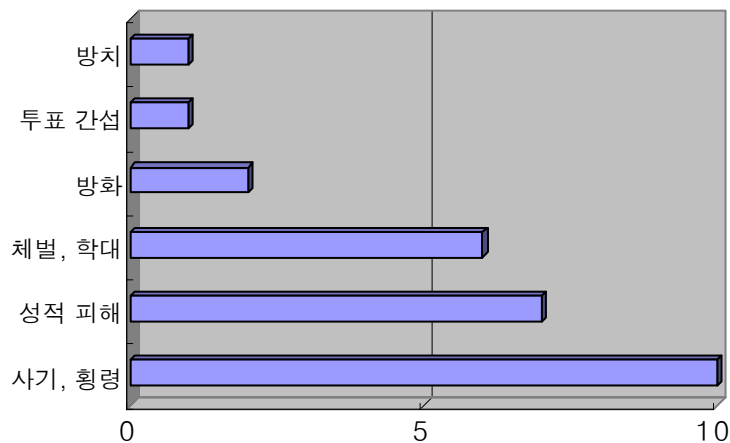


<그림 1> 2000년 장애인 인권침해 신문 보도 건수

(정신지체 관련: 402/1,120건)

출처: 堀江まゆみ (2002). “現代社會における知的障害のある子・人の人権侵害事件”.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編, 虐待はいま…, 東京: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49.

<그림 2>는 2000년도 1년간 보도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사기·횡령 등 경제적 착취가 10건(이것은 보도 수가 아니고, 실 사건 수임), 성적 피해에 관한 사건이 7건, 체벌·학대가 6건, 방화(범죄)가 2건, 투표 간섭과 방치가 각각 1건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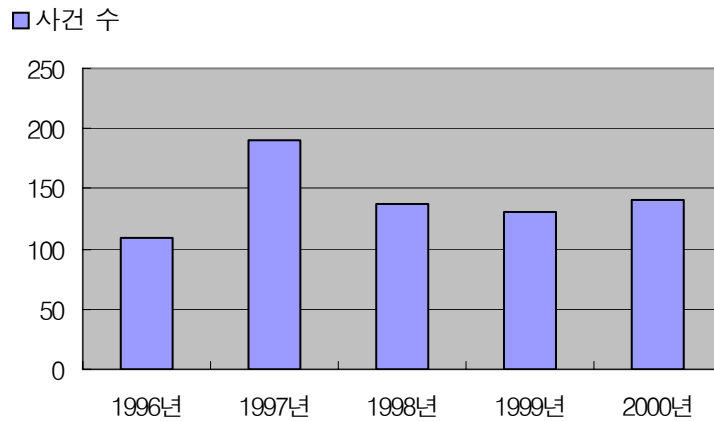


<그림 2> 2000년에 보도된 범죄·침해의 분류(실 사건 수)

출처: 堀江まゆみ (2002). “現代社會における知的障害のある子・人の人権侵害事件”.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編, 虐待はいま..., 東京: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49.

실제 사건 수에 비해 신문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공론화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은 1996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지적장애 관련’ 보도 기사 건수이다. 대략 130건 정도의 기사가 각지의 신문에 게재되었고, 1997년에 보도 수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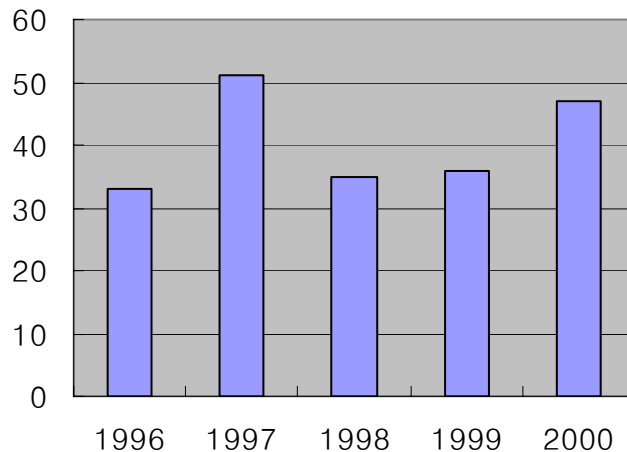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지적장애 관련’ 보도 기사 건수

출처: 堀江まゆみ (2002). “現代社會における知的障害のある子・人の人権侵害事件”.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編, 虐待はいま…, 東京: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49.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사건을 다룬 경우를 제외한 보도된 실 사건 수는 1996년의 경우 총 33건이었다. 堀江まゆみ(2002, p. 49)에 의하면, 폭행, 금전 탈취, 성적 학대가 중복 피해를 당하는 사건의 경우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병원·작업소에서 폭행, 외출 규제, 수험 거부, 투표 간섭 등 다양한 유형의 침해가 일어났다고 한다.

1997년에 보도된 실 사건 수는 51건이었다. 1997년 역시 폭행, 금전 탈취, 성적 학대가 중복 피해를 당하는 사건의 경우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기쇼크, 최저이자금리 위반, 공동주택에서의 트러블 등의 침해도 일어났다.

1998년에 보도된 사건 중 실 사건 수는 총 35건이었다. 이 중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 크게 다루어졌다. 특히 입소시설, 시립중학교, 병원, 양호학교(특수학교)에서 지도원·교사 등 지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일으켜 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림 4> 연도별 보도된 실 사건 수¹⁾

1999년에 보도된 사건 중 실 사건 수는 총 36건이었다. 이 중에서 회사 기숙사, 작업소에서의 체벌·폭행이 집중 보도되었으며, 특히 긴급 사태 발생 시 정신지체인에 대한 대피 지시가 늦게 이루어진 문제, 공공주택 입주 거부에서 보이는 자격 요건의 문제 등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2000년에 보도된 사건 중 실 사건 수는 총 47건이었다. 과거 잇달아 반복해서 보도되었던 폭력, 금전 착취, 성적 학대의 피해가 주목되었으며, 그 외 입소시설에서의 투표 간섭, 방화사건, 정신지체인의 방화사건, 버스 안 방치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 堀江まゆみ(2002)는 투표 간섭 등 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 <그림 4>는 堀江まゆみ(2002)의 <표 1> 1996년 사건별 신문게재 기사 건수(p. 50), <표 2> 1997년 사건별 신문게재 기사 건수(p. 51), <표 3> 1998년 사건별 신문게재 기사 건수(p. 52), <표 4> 1999년 사건별 신문게재 기사 건수(p. 53), <표 5> 2000년 사건별 신문게재 기사 건수(p. 54)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2. 국내·외 정신지체인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관련 판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일부 법률에 존재하는 관련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국가(정부, 법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에 관련 실정법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 원리를 통해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에 노력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의 존재를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이하에서는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미국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들과 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및 법령을 살펴보고, 향후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관련 근거 법령 및 인권침해 사례의 검토

미국 판례들의 특징을 보면, 관련 실정법이 없는 경우라도 헌법 조항이나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 원리를 통해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고, 수용시설의 개선과 교육에서 시작하여 시설 밖 생활(사회복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보호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장애인이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관련 법령의 검토

①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상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에서 유래하여 Virginia 주 헌법을 통하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와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절차(형벌권 행사) 뿐만 아니라 입법권 행사의 기준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국가(의회)는 국민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로 제정해서도 안 된다. 정신지체인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그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나 박탈이 되므로 반드시 적법절차를 따라야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신지체인을 즉시 석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②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제1항에서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주(州)가 임의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내용은 주정부가 정신지체인의 구금, 교육, 사회 복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③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8조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8조는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범죄 등 잘못된 행동을 한 정신지체인에 대한 구금 등에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④ 42 U. S. Code § 1983(박탈된 권리들에 대한 민사소송)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국민이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실제로 *Youngberg v. Romeo*(1982) 판례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재활법은 직업 교육, 고용 보장, 독립적인 생활, 소송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보장 프로그램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장애인 각자의 권리, 옹호 및 보호에 중점을 둔 다양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법은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에게 교육과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립 장애·재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와 ‘국립 장애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활동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⑥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흑인, 여성, 종교적 소수집단에게까지 시민권이 확대되자 장애인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1970년대, 1980년대로 이어진 장애인의 권리운동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장애인들에게도 부여하자고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90년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장애인법은 고용, 공공시설 이용, 운송 수단, 연방과 지방정부의 서비스, 통신 등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⑦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은 1963년에 제정된 ‘정신지체시설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건축법(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Mental Centers Construction Act)’에서 출발한다. 후자의 법은 1970년의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 건축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ct)’, 1975년의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ly Disabled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1978년의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등을 거쳐 현재의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에 이르게 되었다.

1963년에 제정된 법의 경우에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University Affiliated Program)’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들의 수를 확대하고 이들을 모집하여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1970년 개정에 의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조율·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위원회(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s)가 신설되었다. 1975년 개정에 의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욕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보호 및 옹호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s)’과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Projects of National Significance)’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발달장애인을 원조하는 ‘직접 지원 활동가(Direct Support Workers)’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엄현정, 2006, p. 7).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기결정, 자립생활, 생산적 활동(productivity), 지역사회에의 완전통합이다.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재활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치료 등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치료·서비스·재활훈련을 제공하는 시설, 주거, 교육,

기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적 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연방정부와 각 주에 부과하고 있다.

현행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은 U.S. Code의 title 42(공중보건과 복지,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중 chapter 144에 규정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가족 지원(Family Support), 발달장애인을 원조하는 직접 지원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Direct Support Workers Who Assist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등 3개의 subchapter로 나뉘어져 있다. subchapter I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반 규정(§§ 15001~15009)²⁾, ‘주(州) 발달장애위원회(State 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 대한 연방지원(§§ 15021~15029), 권리의 보호 및 옹호(§§ 15041~15045), ‘발달장애 교육·연구·서비스에서의 우수 대학센터의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University Centers for Excellenc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 15061~15066),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15081~1508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subchapter II (가족 지원)는 기술적인 지원(§ 15098),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151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ubchapter III(발달장애인을 원조하는 직접 지원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은 ‘리칭 업 장학 프로그램(Reaching up scholarship program)’(§ 151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Cornell Law School, n. d.).

위 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 발달장애위원회, 보호 및 옹호 시스템, ‘발달장애 교육·연구·서비스에서의 우수 대학센터’ 등을 마련하고 있고, 각 주로 하여금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각 주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원조하는 직접 지원 활동가를 위하여, 다양한 장소에 거

2) 중요 규정으로는 § 15007 ‘발달장애인의 고용’, § 15009 ‘발달장애인의 권리’ 등이 있다.

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원조하는 직접 지원 활동가에게 고등교육을 위한 바우처(voucher)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장학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컴퓨터 이용, 멀티미디어 사용, 역량 중심, 대화식 교육에 기반을 둔 직원개발 커리큘럼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평가·보급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대표적인 판례

① *Wyatt v. Stickney*(1971)

Wyatt v. Stickney 판결은 정신질환과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보호)와 재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Wyatt v. Stickney* 판결은 환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정신 상태를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부여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과거에 주정부가 비용과 충분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제한해 오던 치료 기회를 시설 밖에서 광범위하게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와 교육 없이 보호시설에 환자들을 구금해 두는 것을 금지시켰다.³⁾

Alabama 주는 1970년 Tuscaloosa에 있는 Bryce 주립병원에 5,200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은 나치 수용소에 비견할 만큼 비인간적인 환경이었고,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철저하게 관심 밖에 있었고,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70년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책정되던 담배세가 삭감되었고, 그 결과 Bryce 주립병원은 100명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20여명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직업적인 치료사 등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해고 후 내과 의사 한 명당 350명, 간호사 한 명당 250명, 정신과 의사 한 명당 1,700명의 환자를 돌보아야만 했고, Tuscaloosa에 있는 'Partlow 주립 학교와 병원(Patlow State School and Hospital)', Mount Vernon에 있는 Searcy 병원 역시 사정이 비슷했다. Searcy 병원에서는

3) 1970년 10월 23일에 제기된 위 소송은 결국 2003년 12월 5일에 기각되었다.

등록된 한 명의 간호사가 2,5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남자 병동은 간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Bryce 주립병원의 해고가 알려진 후, Alabama 대학 심리학과 직원들은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 소송에 앞장섰고, 그들의 목표는 연방법원으로 가서 직원들이 해고되면 시설 내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투는 것이었다.

위 소송은 Montgomery에 있는 ‘미 Alabama 주 중부지방법원(The U. 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Alabama)’에 제기되었고, Frank M. Johnson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Johnson 판사는 ‘정신보건 · 정신지체 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Mental Retardation)’는 그러한 고용과 해고 권한이 있으므로 연방법원은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Johnson 판사는 비자발적으로 주립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연방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Wyatt 판결에서 나온 보호와 치료의 전환이 있기까지 Bryce 주립병원과 같은, 주의 정신보건 및 정신지체 센터들은 가족이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떠넘기는 근거로 종종 사용되었다. 그곳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정신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노인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시설들은 침대가 서로 붙어 있는 창고 같았고 뒤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수용되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언제 죽었는지, 사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기록도 없었다.

소송 당사자로 되어 있는 Ricky Wyatt는 소송 제기 당시 15살로 Bryce 주립병원에서 해고된 사람들 중 한 명인 W. C. Rawlins 씨의 조카로 Alabama 주 Tuscaloosa에 있는 Bryce 주립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다. Ricky는 청소년 범죄 혐의로 1969년에 Bryce 주립병원에 수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Selma에 있는 아이들의 그룹홈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이었다. Ricky에게 수용 결정을 한 법원은 Ricky가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희망했을 뿐이었고, Ricky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Johnson 판사는 직원 해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Rawlins 씨와 Ricky가 환자들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Ricky를 원고로 추가함으로써 대리인(변호사)들은 직원 해고로 인하여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Ricky는 젖은 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문의 널빤지 사이로만 빛이 들어오는 밀실 같은 방에 갇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그의 이모는 그가 얼마나 독하게 투약을 받았는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Ricky는 쇼크치료에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의 이모가 그 치료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그 치료는 받지 않았다.

위 소송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에 관한 두 가지 진전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1960년에 ‘치료에 대한 권리’라는 혁신적인 저서를 발간한 변호사이자 의사인 Morton Birnbaum의 연구·저서와 관계되어 있었다. 그 저서에서 Birnbaum은 정신 시설에 수용된 환자 각각은 그들의 정신 상태를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부여받을 법률상 권리가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켰는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든 혹은 그 정도가 심하든 간에 그 환자의 의지에 따라 석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재활을 얻는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개선의 수단으로는 사용되었다.

두 번째 진전은 ‘정신보건 변호사단(mental health bar)’의 발기였는데, 그들의 목표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비자발적인 결정을 없애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들이 법원에 모든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a)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에 관한 헌법적인 권리의 창설, (b)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헌법적인 권리의 창설, (c) 안전, 교육, 훈련, 투약, 영양 공급, 물리적 편의시설, 직원 당 환자의 비율, 개별화된 치료, 애프터케어(aftercare)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었다. Wyatt의 변호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립시설들의 상태는 수용된 환자가

한밤중에 열려 있는 약 캐비닛에서 다량의 약을 꺼내 먹고 사망하기도 하고 9년 동안이나 손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도록 구속복을 입혀놓는 등 (Partlow 주립 학교와 병원의 사례) 매우 열악하였다.

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Alabama 주는 공공시설에 수용된, 정신병이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에 관한 비용 지출에서 50개 주 중에서 50번째였다. Alabama 주는 환자 한 사람당 하루에 50센트를 이들 시설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에 배정했고, 이 때문에 그 시설들에는 소방시설이나 소화기구가 없었으며, Partlow의 경우에는 오후 5시에 모든 스위치를 내려놓아 그 시간 이후에는 소방서와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1971년 3월 12일에 Johnson 판사는 “Alabama 주가 치료 목적으로 Bryce 주립병원에 공적으로 수용된 수천 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의학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실패하였고, 그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타적인 논리에 근거할 때 어떠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인도적인 치료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Johnson 판사는 Bryce 주립병원에게, 기준을 만들고 각 환자들이 그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6개월을 부여하였다.

1971년 8월 22일에 원고들은 원고단에 Searcy와 Patlow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된 환자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시설들의 상태 역시 Bryce 주립병원에 못지않다고 주장하였다. 1971년 12월 22일에 Johnson 판사는 적절한 치료 기준을 마련하는데 6개월을 부여했음에도 Bryce 주립병원이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 모든 전문가들은 Bryce 주립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증언하였다. Johnson 판사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Bryce, Searcy, Partlow의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의료적이고 헌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다.

1972년 1월 17일에 당사자들은 Georgia 주의 Atlanta에서 만나 주립시설의 적절한 치료 기준의 개발을 협의하였고, 두 가지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주(州)의 정신과 시설에서 최소한의 적절한 정신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기준이었고, 다른 하나는 Partlow에 부과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안들은 지방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은 1972년 2월 3일과 4일에 Bryce 병원과 Searcy 병원의 합의에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Partlow에 관한 청문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되었다. Partlow의 청문회가 끝날 무렵, 법원은 피고들이 Partlow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상등 시스템의 설치, 300명의 추가 상주 보호요원의 고용, 부엌의 위생상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담당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그곳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박탈의 환경 때문에 Partlow 주립 학교와 병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신지체인들을 교육할 만한 요건을 전체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수용자들을 퇴보하게 하고 열악하게만 하는 창고와 같은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시설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정신병과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합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② *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PARC) v. Commonwealth of Pennsylvania*(1972)

Pennsylvania 주에 살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지체 아이를 둔 몇몇의 부모들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지 못했던 정신지체인들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쟁점은 Pennsylvania 주가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교육·치료를 거절한 것이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동등한 보호의 권리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였다.

관할 법원은 주정부는 정신지체인들의 교육과 거주 보호에 관한 책임이 있고, 정신지체인들 역시 동등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즉, Pennsylvania 주는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의 능력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는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Pennsylvania 주는 6세와 21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특수 아동들 전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착수하였다. 위 판결은 이전에 전문적이거나 관료적인 문제들로 치부되었던 교육적인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에 관한 발전적인 경향을 보여주었고, 위 판결로 인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수와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③ *Mills v. Board of Education of District of Columbia*(1972)

행동장애, 지체장애, 가벼운 뇌손상으로 인한 과잉행동장애, 간질, 어릴 적의 병으로 인한 뇌손상과 지체장애 및 반신불수 장애 등을 가진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특수 아동들’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적법절차 권리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나 재정적인 한계가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미해결의 핵심이었는데, 위 판결은 교육 서비스는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New York State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Inc. v. Rockefeller*(1973)

Willowbrook 주립학교(Willowbrook State School)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부모들이 그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텔레비전에 Willowbrook 주립학교의 열악한 시설이 방영되어 일반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사람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비인간적인 치료 환경에서 참고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 소송과 더불어 이러한 언론의 폭로, 또 다른 지원의 덕에 결국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시설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거처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⑤ *Garrity v. Gallen*(1981)

1978년 ‘New Hampshire 주 법률지원단(New Hampshire Legal Assistance)’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성인들을 수용하는, New Hampshire 주의 유일한 공공시설인 ‘Laconia 발달 서비스(Laconia Developmental Servic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1년 연방법원 판사는 New Hampshire 주에게 시설 개선,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개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등을 명하였다. New Hampshire 주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 배치와 지역사회 중요한 기반시설의 건설을 요구하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판결은 주정부의 행정과 계획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1992년 1월 31일에 New Hampshire 주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로 인해 New Hampshire 주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⑥ *Jackson v. Fort Stanton*(1990)

1987년 7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New Mexico 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복지부(Human Services Department), 직업 재활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및 여러 공무원들을 상대로 연방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발달장애인들이 수용된 주립시설 두 곳에서의 위험적 환경을 개선하고, 중증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불필요하게 격리하여 재활법을 위반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연방법원은 피고들이 중증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불필요하게 격리시키며 18개의 격리된 지역에서 위험적 환경을 가진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위 법원은 당사자들이 확인된 법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의할 것을 명하였다.

당사자들은 18개의 열악한 시설의 개선 계획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협의하였

다. 이후 5년 동안, 피고들은 시설의 부족한 점들을 바로 잡고 시설 생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러한 노력 후에 시설 내 확인된 결함 중 많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자, 1996년 원고들은 피고들을 법정 모독, 계속되고 있는 학대, 유기, 시설에서의 전문적이고 적절한 보호의 부족, 지속된 불필요한 격리 등으로 구속하도록 재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⑦ *Olmstead v. L. C. & E. W.*(1999)

미국장애인법이 주정부의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로 하여금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내용이 위 법에서 추론될 경우 그것이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제5항에서 부여한 연방의회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례이다.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1995년에 ‘Georgia 주 지역병원(Georgia Regional Hospital)’을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주(州)법률에 따르면, 병원 공무원들은 그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적합한 지역사회에서 그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위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것은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거부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Lois Curtis는 ‘Georgia 주 북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에 소송을 제기하여 병원 공무원들이 그녀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미국장애인법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8개월 후 Elaine Wilson 역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4) 미국장애인법 title 2는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는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하게 가장 차별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주립병원이 그녀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 공무원들은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장애 때문에 지역사회 생활이 거절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장애인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정부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립병원이 그녀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주정부의 주장처럼 병원에서 비장애인들과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Georgia 주의 ‘정신보건, 정신지체 및 약물남용 국(Division of Mental Health and Mental Retardation and Substance Abuse)’에서 일하는 Betty Bentley Watson은 다른 요인들이 그녀들을 퇴원시키는데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Bentley Watson은 Georgia 주 법률들이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맞춘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Georgia 주립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당시에는 적절한 지역사회 배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Bentley Watson은 ‘그것은 지역사회 배치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맞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Georgia 주 북부지방법원은 그녀들을 병원에 감금한 것은 차별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한 것과 같으며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고, 그녀들을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Georgia 주립병원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Georgia 주법은 치료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시설과 지역사회 간에 기금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을 병원에 있도록 하는 데 주정부가 사용하는 돈이 얼마이든 간에 그 돈은 그녀들을 적절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주립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제11 순회항소법원(The 11th Circuit Court of Appeals)’ 역시 원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항소법원은 지역사회 배치가 적정함에도 주정부가 독단적으로 한 개인을 시설에 구금하였다면 이는 주정부가 미국장애인법의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핵심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판시하였고,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이 Georgia 주립병원에 감금된다면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된 기회를 갖게 될 뿐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항소법원은 미국장애인법이 주정부가 격리된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주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지역사회 배치 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었다는 주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그러한 주장은 공공 기관이 단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장애인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장애인법에 따르면 한 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장애인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항소법원은 보았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은 환자들을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환경으로 이전하는 조치들이 George 주립병원의 서비스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984년 12월 14일에 사건기록 이송을 명하였고, 법무차관이 법정조언자 의견을 제출하고 구두변론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대법원은 1999년 6월 22일에 6대 3으로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고, 증거 심문의 범주에 관한 결정에 한하여 그 사건을 환송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주정부의 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설보호에서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의 이전을 그 영향을 받는 개인이 반대하지 않으며 주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다른 정신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는, 주정부가 정신장애인을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⑧ *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 v. Halderman*(1984)

정신지체로 주립시설에 살고 있던 Halderman은 그 시설의 상태가 집단 소송 구성원들의 연방헌법·법률상의 여러 권리들과 ‘Pennsylvania 주 정신보건 및 정신지체 법(Pennsylvania Mental Health and Mental Retardation Act)’상 권리들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주정부가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훈련(habilitation)의 책임을 맡는다면 개인의 필요에 맞는 최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거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3 순회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또한 Pennsylvania 주법은 주정부가 최소 제한적인 환경 접근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1조⁵⁾에 따를 때 연방법원은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주법을 따르라고 명할 권한이 없다며 항소심판결을 뒤집었다.

⑨ *Youngberg v. Romeo*(1982)

한 정신지체인이 비자발적으로 Pennsylvania 주립시설에 수용되었다. 그 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시설에서 받은 상해를 염려하여 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시설 공무원을 상대로 42 U. S. C. § 1983(박탈된 권리들에 대한 민사소송)에 근거하여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녀는 시설수용자는 안전한 수용 환경, 육체적인 감금으로부터의 해방, 훈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시설 공무원들은 그의 상해를 알았거나 알

5) 합중국의 사법권은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국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있어야만 했으나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은 대배심 절차에서 지방법원은 배심원에게 수정 연방헌법 제8조가 책임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라는 전제 하에서 평결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배심원들은 수정 연방헌법 제8조에 따라 평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은 주장된 권리들에 대한 헌법적인 적절한 근거는 수정 연방헌법 제8조보다는 제14조가 제공하며 수정 연방헌법 제14조는 비자발적으로 수용된 개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적 안전에 있어서의 자유권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판결을 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비자발적으로 주(州) 정신지체시설에 수용된 거주자들은 안전한 수용 환경, 육체적인 감금으로부터의 해방 및 이러한 권리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적절한 훈련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법령의 검토

(1)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잇달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4. 9. 15. 선고 2004노425 판결,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에서 담당재판부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비록 피해자가 6~7세가량의 지적 수준으로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신지체인인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렵고 약간의 위협이나 폭행이 있더라도 쉽게 강간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지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들은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서울중앙지법 2004고단8192 판결(정신지체 2급으로 사회연령이 9세로 판단되는 피해자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고합352,709(병합) 판결(정신지체를 가진 14세의 여중학생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112 판결(정신지체 2급인 22세 여성으로 사회연령이 5.8세 정도로 판단된 사건) 등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에서 정신지체 1급으로 7, 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17세의 피해자가 형법 제302조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다.

② 수원지방법원 판결(노예 할아버지 사건)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정신지체인(일명 노예 할아버지)을 46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상습폭행하고 생계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 모(65) 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로 말과 행동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에게 46년간 머슴살이를 시키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고 상습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한데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보조금까지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고,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한 원고(정신지체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대지, 원고 소유의 전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면, 원고가 위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④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원고들은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 소속의 회원들인데, 아산지회는 2005년 3월경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의 후원하에 장애아동들(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의 사회적응교육의 목적으로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교사 등이 함께 국내 여행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하여 왔다.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8일에 충북 음성군 소재 재활용박물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아산지회의 대표자인 원고 김 모 씨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신하여 2005년 5월 27일 18:10경 피고의 천안지점 아산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원고들의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의뢰하면서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여행자 명단과 여행지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내부방침 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까지 모두 피고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보험회사의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검토

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인지체를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에서 정인지체인을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제1항 관련)’에서는 정인지체인을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제1급),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제2급),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제3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8조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주 등에게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일부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9조의 2, 3,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참조).

④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다음 각 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를, 제2호에서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규정하여, 정신지체를 가진 영유아가 위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⑤ 특수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신지체인’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특수학교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에서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그 시행령 제40조에서 특수학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치료교육 과목에 대한 교원 자격 외에 치료교육 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정신지체의 경우에 ‘감각·운동 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치료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6항, [별표 1의 2] ‘장애영역별 치료교육 영역’ 참조).

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8조는 장애인이 성폭력에 대항할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성폭력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므로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를 강간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이다. 과거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과 같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성폭력특별법은 ‘신체장애’, ‘정신상의 장애’와 같이 장애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으나, 법원은 그 적용,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⑦ 병역법

병역법은 제6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병역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제1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⁶⁾(제7호)이 병역 면제의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⑧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20조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인적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제52조의 2에서는 5억 원의 한도에서 장애

6) 원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5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⑨ 소년원법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이 ‘발달장애가 심하거나 각종 심리검사 결과 그 지체 정도가 심하여 정신과의사로부터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당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⑪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조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의 채취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때에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 등의 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⑫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살아 있는 자⁷⁾로서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경우라도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었다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 적출이 가능하고, 이 때에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때에는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

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 공급할 수도 있다.

3. 결론

본 장을 통해 일본의 경우도 폭력, 금전 착취, 성적 학대의 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堀江まゆみ(2002)는 특히 ‘폐쇄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도시아카스(水戸アカス) 사건’(水戸事件とは, 연도불명)이나 ‘시라카와 육성원(白河育成園)’(白河育成

7)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법 제3조 제4호 참조).

園被害者弁護団, 1997)도 일반인들의 눈이 닿지 않는 ‘폐쇄적인 생활 장소’에서 일어났다. 근처에 복지관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자체가 ‘사회적 폐쇄성’을 안고 있어 가까이 있는 장애인의 피해가 숨겨져 있는 예가 많다. 시라카와 육성원의 경우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인권침해가 드러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특유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堀江まゆみ, 2002, p. 56).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적어도 인권침해 사건들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정신지체인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관련 판례의 검토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향후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현행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교육, 보호, 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고 관할 부처가 서로 다른 관계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신지체인에 대한 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신지체인의 경우에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포함시켜 동 법을 장애인 관련 통합 법률로 개정하거나, 현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에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결정 능력이나 자립생활 능력을 구비한 경우가 있어 시설 밖에서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지체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경제적·교육적 지원 확대, 그룹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지체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미국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정신지체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신지체인 교육을 위한 전문가·활동가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법원은 정신지체인의 보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각 소관부처들은 관련 법령의 미비를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가장 큰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각 사람의 기회 균등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전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가 정신지체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성폭력특별법 판례에서 보듯이 우리 법원은 아직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신지체가 가진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정신지체인의 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Ⅲ.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선,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전화, 내방,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 사례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상담한 총 건수는 2,941건인데, 그 중에서 정신지체인과 관련해 상담이 진행된 것은 총 428건이었다. 정신지체인과 관련된 428건을 분석한 결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정신지체인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 사례는 180건이었다.

이 180건을 다시 분석해 유형화해 본 결과, 재산권(59건), 신체자유권(52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시설입소 문의, 25건), 노동권(23건),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권리(10건), 교육권(8건), 모·부성권(자녀를 양육할 권리, 3건) 순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7가지 유형 중에서 사례 수가 최소한 10건을 넘는 유형은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총 159건이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3) 자료 분석

위 7가지 유형 중에서 사례 수가 최소한 10건을 넘는 네 가지 유형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등 양적 분석을 하여, 그 결과와 함께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권리, 교육권, 모·부성권 등 나머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사례 수가 너무 적어 양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주요 사례만을 위 네 가지 유형에 앞서 소개하

내용	사례(건)	비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상담한 사례	2,941	
↓		
정신지체인과 관련된 사례	428	
↓		
지역사회에서 사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	180	연구에 사용한 사례
↓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사례	159	연구에 사용한 사례

<그림 5> 조사 대상 사례

였는데, 한정된 지면상 사례를 모두 소개하기 보다는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난 몇 사례를 선택하였다.

2.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 내담자의 일반적 현황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사례 159건 중에서 중복 차별을 받은 경우를 고려하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내담자는 13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한 인권침해 유형 분석은 상담한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역으로 내용분석을 한 것이어서, 침해 내용과 관련 없는 정보들은 수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 131명에 대한 일반적 현황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알 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권에 대한 상담을 한 사람의 경우 취업 상태를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침해 내용은 굳이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정보라 상담 내용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침해 영역에 있어서는 ‘알 수 없음’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인권침해를 받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일반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성별은 남성이 51.1%, 여성이 47.4%, 알 수 없음이 1.5%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대, 30대, 40대 등이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정신지체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어느 한 연령대에 집중해 있기 보다는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는 3급이 41.2%, 2급이 27.5%, 1급이 15.3%였으며 3.1%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고 등급을 알 수 없음도 13.0%로 나타나, 경계급인 3급이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 외에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체에서 11.5%로 나타났는데, 자폐증 등 다른 발달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의 생계비 수급 여부는 수급자가 21.4%, 비수급자가 40.5%, 수급 여부를 알 수 없음이 38.2%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상담한 의뢰인은 본인의 경우가 1.5%고, 나머지는 모두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가 31.3%, 형제자매가 19.1%, 이웃이 18.3%, 친인척이 13.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에게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본인이 대응을 하기 보다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피해자의 지인이 외부로 알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79.4%,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20.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좋고 싫음 등에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신변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가 92.4%이며 신변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는 7.6%를 차지하였

<표 1> 정신지체인의 일반적 현황

변수	범주	빈도	%
성별	남	67	51.1
	여	62	47.4
	알 수 없음	2	1.5
연령	10세 미만	9	6.9
	10세 이상 ~ 20세 미만	21	16.0
	20세 이상 ~ 30세 미만	24	18.3
	30세 이상 ~ 40세 미만	16	12.2
	40세 이상 ~ 50세 미만	16	12.2
	50세 이상 ~ 60세 미만	11	8.4
	60세 이상	4	3.1
	알 수 없음	30	22.9
장애 등급	1급	20	15.3
	2급	36	27.5
	3급	54	41.2
	알 수 없음	17	13.0
	미등록	4	3.1
중복장애 여부	있다	15	11.5
	없다	116	88.5
수급자 여부	수급자	28	21.4
	비수급자	53	40.5
	알 수 없음	50	38.2

<표 1> 정신지체인의 일반적 현황(계속)

변수	범주	빈도	%
상담 의뢰인	본인	2	1.5
	부모	41	31.3
	배우자	2	1.5
	형제자매	25	19.1
	자녀	4	3.1
	친인척	17	13.0
	이웃	24	18.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2	9.2
	기타	4	3.1
의사소통 가능 여부	의사소통 가능함	104	79.4
	의사소통 어려움	27	20.6
신변처리 가능 여부	스스로 신변처리 가능함	121	92.4
	스스로 신변처리 불가능함	10	7.6
취학 상태	취학 중	21	16.0
	취학 중 아님	108	82.4
	알 수 없음	2	1.5
현재 취학 중이 아닌 경우에 학력(n=108)	무학	18	16.7
	초졸	5	4.6
	중졸	1	0.9
	고졸	6	5.6
	알 수 없음	78	72.2

<표 1> 정신지체인의 일반적 현황(계속)

변수	범주	빈도	%
취업 상태	취업 중	34	26.0
	과거 경험 있으나 현재 실업	10	7.6
	취업한 적 없음	49	37.4
	알 수 없음	38	29.0
결혼 상태	미혼	95	72.5
	배우자와 동거	18	13.7
	별거	3	2.3
	이혼	3	2.3
	사별	5	3.8
	알 수 없음	7	5.4
미혼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 장애 유무 (n=36)	있다	13	36.1
	없다	7	19.5
	알 수 없음	16	44.4
배우자 장애 유형 (n=13)	지체장애	3	23.1
	뇌병변장애	1	7.7
	정신지체	9	69.2
미혼이 아닌 경우에 자녀 유무(n=36)	있다	16	44.4
	없다	11	30.6
	알 수 없음	9	25.0

<표 1> 정신지체인의 일반적 현황(계속)

변수	범주	빈도	%
부모 생존 여부(n=90)	모두 생존	31	23.7
	모 생존	36	27.5
	부 생존	10	7.6
	모두 사망	13	9.9
	알 수 없음	41	31.3
형제자매 유무	있다	57	43.5
	없다	12	9.2
	알 수 없음	62	47.3
부모 모두 생존 시 부모 결혼 상태(n=31)	부모가 같이 살고 있음	23	74.2
	부모 별거	2	6.5
	부모 이혼	5	16.1
	알 수 없음	1	3.2
부모 생존 시 부모 장애 유무(n=77)	부모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다	13	16.9
	부모 모두 장애가 없다	64	83.1

다. 여기에서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다’의 조작적 정의는 혼자서 대소변 등 처리가 가능하고 먹거나 입는 것 등이 자유롭게 가능함을 의미한다.

취학 상태에 있어서 현재 취학 중인 사람은 16.0%였고, 현재 취학 중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무학이 16.7%, 초졸이 4.6%, 중졸이 0.9%, 고졸이 5.6%로 매우 낮은 학력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26.0%였고,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37.4%를 차지하였다.

전체 131명 중 미혼인 사람은 72.5%, 결혼(동거 포함)을 했던(혹은 하고 있는) 사람은 22.1%, 결혼 상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5.4%로 나타났다. 미혼이 아닌 사람 중에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36.1%였다.

장애가 있는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장애 유형은 정신지체가 69.2%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가 23.1%, 뇌병변장애가 7.7%를 차지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16.9%로 나타났다.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인권에 대한 침해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정신지체인들이 가해자로 오인 받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례를 보면 정신지체인이 단지 사건 현장 근처를 배회했다거나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가해자로 오인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정신지체의 장애 특성에 무지한 경찰들이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이 바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18세, 의뢰인: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성추행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배회하던 정신지체인을 가해자와 비슷하다고 경찰이 한 것이 체포의 근거였다. 정신지체인의 특수학교 담임교사는 경찰에게 그 정신지체인이 자폐 성향이 강하고

경계심이 많으며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시키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발적인 행동 성향이 별로 없는 편이나 기억력은 좋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수감까지 채워 체포한 것에 대하여, 담당 형사는 일반인이면 구치소에 구속될 사건이나 장애가 있어서 불구속 수사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게는 조서를 확인하라는 말도 없이 지장만 찍으라고 했다. 그런데도 형사는 정신지체가 있는 미성년자의 말만 듣고 조서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2)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32세, 의뢰인: 여동생

어떤 남성이 초등학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정액을 뿌렸는데, 그 학생이 정신지체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그 정신지체인은 항상 그 초등학교 앞에서 복지관을 오가는 버스를 기다리곤 하였다. 그 날도 신호등 앞에서 복지관 버스를 기다리던 정신지체인을 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한 어머니가 잡아끌고 갔다.

형사는 복지관 교사가 작성한 사건 당일 일지에서 정신지체인이 복지관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잘못 적었을 수 있다고 억박질렀다. 해당 학교 교감은 정신지체인이 가해자가 맞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피해 학생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정신지체인은 이후 무혐의 처분되었지만, 정신지체인의 여동생은 경찰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학교 및 학교 어머니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였다.

(3) 피해자: 정신지체 2급/여성/연령불명, 의뢰인: 사회복지사

피해자는 노인인데 같이 사는 사촌언니와 조카들에게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당하였다.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키는 바람에 면담 시에는 “미끄러졌다. 넘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맞을 짓을 해서 맞았지”라고 말해 구타를 당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3) 교육권 침해 사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드러난 사례를 보면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정신지체인들과 부모들은 급우, 교사, 다른 학부모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받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자/8세, 의뢰인: 부모

초등학교 입학 당시 반 배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아이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부랴부랴 반이 정해져 담임을 만났으나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 아이의 장애가 심해서 어렵겠다며 다른 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특수반에서 부분 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아이가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지내길 바랐기 때문인데, 학교는 그것을 받아주질 않았다.

또한 얼마 뒤 학급을 대표하는 부모 몇몇이 찾아와 하루 종일 특수반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종용하였다. 의뢰인은 아이의 상황과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부모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등교거부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부모들은 차라리 월체어를 탔으면 그나마 낫겠다느니, 이런 아이를 학교에서 왜 받아 주었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의뢰인이 그대로 물리나면 아이는 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할 상황이었다.

(2) 피해자: 정신지체 1급/남자/9세, 의뢰인: 부모

부모가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1년 유예시켰다. 그런데 다음 해 학교 입학 시 그 아이는 2학년으로 배치되었다. 이에 항의했더니, 이는 학교장 재량 사항이라고 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입학 유예 연도만큼 조기 진급시킨다는 내규를 이유로 들었다.

아이의 진학을 1년 유예시킨 것은 아이가 장애 때문에 1학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부모가 생각했기 때문인데, 1학년도 다니지 않은 아이를 바로 2학년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입증하고 싶어 했다.

4) 모·부성권 침해 사례

아이를 낳고 기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는 정신지체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정신지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모·부성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정신지체 2급/여성/44세, 의뢰인: SBS

피해 여성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 보험금 1억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누이가 보험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누이는 피해 여성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시누이는 피해 여성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버렸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시누이의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 여성은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인데, 안과 전문의에 따르면 심한 가격(加擊)으로 인한 실명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피해 여성은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시누이는 피해 여성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때렸다고 하였다.

(2) 피해자: 정신지체 3급/여성/연령불명, 의뢰인: 언니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 그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연체가 되었다. 또한 그는 신용대출에서 대출도 받았다. 피해자는 생계비를 받는 형편이었는데, 전 남편이 억박지르거나 달래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았다.

피해자는 아이를 기르고 있었으나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의뢰인은 그 조카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알고 싶어 했다.

5) 재산권 침해

상담 내용 중 지역사회에서 사는 정신지체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유형이 재산권 침해였다. 이들의 침해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 재산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

범주	빈도	%
사유재산 침해	6	8.6
유산 횡령	2	2.9
보험금 횡령	5	7.1
임금 착취	13	18.6
정부보조금(생계비와 장애수당) 횡령	16	22.9
명의로용으로 인한 재산상 침해	26	37.1
보험 관련 권리침해(보험가입 제한, 보상금 제한)	2	2.9
합계	70	100.0

재산권 침해 유형으로는 피해자 명의로용으로 인한 재산상 침해가 37.1%, 생계비 및 장애수당 등의 정부보조금 횡령이 22.9%, 임금 착취가 18.6%, 사유재산 침해가 8.6%, 보험금 횡령이 7.1%, 유산 횡령이 2.9%, 보험가입 제한이나 보상금 제한 등 보험 관련 권리침해가 2.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지체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재산권 침해는 장애인 명의로용과 정부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피해이다.

명의로용은 휴대전화 개설 및 사용,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복지혜택이 있는 제도나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해자들은 정신지체인의 법률 행위를 뒷받침할 제도나 요건이 없는 현실에서 장애를 악용해 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 카드 뿐 아니라 은행 대출 시 명의를 도용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재산을 가로채가는 등 피해 양상도 다양하였다.

결국 이러한 침해는 정신지체인의 가족들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그것도 가족들이 책임지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인 경우가 많아 이것은 정신지체인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보험회사가 정신지체인의 보험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로는 회사 측이 정신지체가 선천성이나 유전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것이 있었다. 정신지체인은 여행자보험 가입도 제한을 받고 있었다.

보험과 관련하여 침해를 받은 한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받는다든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정신지체인들은 장애 특성상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의 침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인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은 <표 3>과 같다. 재산권 침해 가해자로는 업주가 26.7% 이웃이 15.0%, 모르는 사람이 13.3%, 친인척이 11.7%, 형제자매가 10.0%, 교우가 10.0%, 기타가 8.3% 배우자가 3.3%, 시부모가 1.7%로 나타났다.

재산권 침해 가해자 중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6.7%이다. 이는 업주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침해 가해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신지체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친척이나 형제가 이를 맘대로 사용하거나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사례, 수십 년간 모아놓은 재산을 친인척들이 갈취해가는 사례 등이 있었다. 따라서 정신지체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제도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이들의 생계비, 수당, 유산 등의 사유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신지체인들 중에서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분포는 <표 4>와 같다. 생계비나 장애수당 등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주가 36.8%, 친인척이 31.6% 본인이 15.8%, 형제자매가 15.8%, 자녀가 5.3%인 것으로 나

<표 3> 재산권 침해 가해자(복수 응답)

범주	빈도	%
친부모	0	0.0
배우자	2	3.3
형제자매	6	10.0
자녀	0	0.0
시부모	1	1.7
친인척	7	11.7
이웃	9	15.0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0	0.0
교직원	0	0.0
교우	6	10.0
업주(공장, 축사, 양계장 등)	16	26.7
모르는 사람	8	13.3
기타	5	8.3
합계	60	100.0

<표 4> 정부보조금 관리자(1)

범주	빈도	%
본인	3	15.8
친부모	0	0.0
배우자	0	0.0
자녀	1	5.3
형제자매	3	15.8
시부모	0	0.0
친인척	6	31.6
이웃	0	0.0
업주(공장, 축사, 양계장 등)	7	36.8
기타	0	0.0
합계	19	100.0

타났다.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난한 정신지체인의 생계가 달린 정부 보조금조차 본인인 관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서 정신지체인의 정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애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보조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정신지체인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한 정신지체인들 중에서 취업 중에 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임금에 대한 침해 상황을 보면,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60.9%, 현금·현물 등으로 임금을 받았다가 39.1%로 나타났다.

사례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임금을 직접 받지 않거나, 업주들이 적금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나 통장에 꼬박 꼬박 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 5> 취업 중 임금 수령 여부

범주	빈도	%
받았다	9	39.1
못 받았다	14	60.9
합계	23	100.0

말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업주 중에는 본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입혀주면서 약간의 일을 시켰는데 따로 임금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은 재산권 침해의 주요 사례들이다.

(1) 피해자: 정신지체 3급/여성/연령불명, 의뢰인: 남동생

남편이 몇 년 전 사고로 사망한 후 피해자가 3,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아주버니가 보험금 전부를 빼돌려 써버렸다. 고소는 했으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서 승소해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2) 피해자: 정신지체 1급/남성/9세, 의뢰인: 어머니

장애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의뢰인이 어린이사랑보험에 들었다. 그런데 장애를 알게 되어 판정을 받고 보험 내용에 있는 특수교육비를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서 정신지체가 선천성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3)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50세, 의뢰인: 이웃

20년간 직장생활로 모은 돈을 동서들이 자신들 명의로 이전시키려 하였다. 재개발되는 아파트 양도권도 동서들에게로 명의를 이전하였다.

(4)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연령불명, 의뢰인: 동생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취직을 미끼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휴대전화 4대의 계약서를 작성시킨 후, 이용청구 금액이 2,400만 원이나 나왔다. 그러나 SK측 명의도용 조사팀에서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요금을 내라고 하였다.

(5) 피해자: 정신지체 3급/여성/28세, 의뢰인: 아버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준다고 유인하여 납치한 뒤 감금시키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100통을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 15개를 개설했으며, 3, 4천만 원의 사용료가 나왔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SK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6) 피해자: 정신지체 3급/여성/23세, 의뢰인: 친척

피해자가 옷 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공장 주인은 임금을 불규칙하게 주었으며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연체료를 떠맡기기도 하였다.

(7) 피해자: 정신지체 3급/여성/49세, 의뢰인: 자녀

피해자는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동네 사람이 피해자를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삼성캐피탈에 300만 원의 돈을 보증 서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삼성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8)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연령불명, 의뢰인: 이웃

피해자의 이웃 사람이 삼성카드에 보증을 세워 현재 4,500만 원의 연체금이 나왔다.

(9)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40세, 의뢰인: 기관 종사자

피해자는 생계비 수급자인데 신용카드를 동생에게 빌려주어 3,000만 원이 연체 중이었다.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의 방법으로 파산신고를 하고 싶어 했다.

(10) 피해자: 정신지체 2급/여성/연령불명, 의뢰인: 기관 종사자

피해자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후 받은 보상금 1,449만 원을 시어머니가 받아썼다.

(11)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43세, 의뢰인: 장모

피해자가 4년 동안 이웃집의 농사일을 했으나 임금을 전혀 못 받았고, 정기 예탁금 약 1,200만 원도 그 이웃집에서 찾아 썼다.

6) 신체자유권 침해

정신지체인이 받는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은 <표 6>과 같다.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은 총 53건의 상담 사례 중 가정폭력이 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폭력이 24.5%, 학교폭력이 20.8%, 직장 내 폭력이 15.1%, 기타 폭력이 5.7%로 나타났다.

<표 6>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1)(중복 응답)

범주	빈도	%
성폭력	13	24.5
가정폭력	18	34.0
학교폭력	11	20.8
직장 내 폭력	8	15.1
기타 폭력	3	5.7
합계	53	100.0

기타 폭력은 다른 폭력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례들인데, 동네 가게 업주에게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따귀를 맞은 뒤 본인은 쓰레기를 버린 일이 없어 억울하다며 매일 울고 술만 마시다 사망한 사례, 기운이 센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이웃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는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피해 사례, 정신지체 3급 여성을 전철역에서 취직시켜 준다고 납치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정신지체인의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신체자유권 침해를 하는 가해자로는 직장 관계자가 17.0%로 제일 많았고, 모르는 사람이 14.1%, 배우자와 교우가 각각 13.2%, 교직원이 11.3%, 친부모가 9.4%, 이웃이 9.4%, 시부모가 5.7%, 형제자매, 자녀, 친인척이 각각 1.9%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 번도 본적이 없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얼굴을 안다고 해도 피해자와 관계없는 사

<표 7> 신체자유권 침해자(1)(중복 응답)

범주	빈도	%
친부모	5	9.4
배우자	7	13.2
형제자매	1	1.9
자녀	1	1.9
시부모	3	5.7
친인척	1	1.9
이웃	5	9.4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0	0.0
교직원	6	11.3
교우	7	13.2
직장 관계자	9	17.0
모르는 사람	8	14.1
합계	53	100.0

람들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모에서 친인척까지가 34.0%를 차지해,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인들의 신체자유권 침해 중 가정폭력의 유형은 <표 8>과 같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61.1%,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16.7%, 방임이 16.7%, 성적 폭력이 5.5%로 나타났다.

‘성적폭력’은 부부 간에 발생한 성폭력으로서,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부인에게 지나친 성행위를 요구하여 허리 등 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의 범위에는 무시나 폭언을 포함해 심리적·언어적·물리적·성적 폭력, 구타, 감금, 방임 등이 있으며, 그 위험성의 수위는 심각하지만

<표 8> 가정폭력의 유형

범주	빈도	%
신체적 폭력	11	61.1
언어적 · 정서적 폭력	3	16.7
성적 폭력	1	5.5
방임	3	16.7
합계	18	100.0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의자, 2002). 장애인은 사회나 가족 내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가 있는 기혼 여성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 남성인 경우는 부모나 형제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속에서 벗어나고자 시설입소나 쉼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가정 위기를 맞은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이 61.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어떠한 폭력이든 어디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지체인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들은 때릴 수도 있고 구박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몰이해나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가정폭력 당시 정신지체인이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는 <표 9>와 같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72.2%, 피신하거나 도망했다가 11.1%,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16.7%로 나타났다.

<표 9>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

범주	빈도	%
피신, 도망	2	11.1
이혼 추진	0	0.0
주위에 도움 요청	3	16.7
알 수 없음	13	72.2
합계	18	100.0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72.2%나 차지한 것은, 대부분 상담들이 정신지체인이 피해를 당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나 이웃이 제보를 하거나 상담을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 사실은 인지했지만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하는 동안 어떤 대응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지체인들은 침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침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별로 없으며, 정신지체인에게 그러한 기관이 있다는 정보도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신지체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혼일 때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은 <표 10>과 같다.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를 보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44.4%.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44.4%이며, 알 수 없다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다.

<표 10>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의 여부

범주	빈도	%
원한다	4	44.4
원하지 않는다	4	44.4
알 수 없다	1	11.2
합계	9	100.0

정신지체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혼한 상황일 때, 폭력에 노출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때,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33.3%,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55.6%, 모르는 경우가 11.1%로 나타났다.

<표 11> 가정폭력 피해 시 다른 피해자 유무

범주	빈도	%
있다	6	33.3
없다	10	55.6
모른다	2	11.1
합계	18	100.0

<표 12>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

범주	빈도	%
부모	1	16.7
자녀	4	66.6
형제자매	1	16.7
친인척	0	0.0
합계	6	100.0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당사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와의 관계를 보면, 당사자의 자녀가 66.6%로 제일 많았다.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들 중에서 부부폭력이 나타난 경우가 47.2%로, 부부폭력과 아동구타와는 매우 상관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문혜숙, 2000).

또한 부모가 피해를 본다는 경우도 16.7%로 나타났는데, 남편에게 정신지체인 어머니가 같이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였다. 그 외에 형제자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16.7%였다.

정신지체인에게 발생한 성폭력 유형은 <표 13>과 같다. 성폭력 유형으로는 강간이 61.5%, 성추행이 38.5%로 나타났다.

<표 13> 성폭력의 유형

범주	빈도	%
성추행	5	38.5
강간	8	61.5
합계	13	100.0

성폭력에는 이외에도 성희롱·강제불임·강제결혼도 포함되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상담에 대해 장애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실시한 성폭력 피해 현황조사를 살펴보았는데, 2003년 성폭력 피해 전화 상담 793건 중 정신지체가 6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8.3%여서, 여성 정신지체인의 성폭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267건 중에서 31.1%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대상 89건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 여성이 26.4%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유형을 보면, 성희롱이 42.9%, 강간이 35.7%, 성추행이 21.4%로 강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이현혜, 2002). 이와 비교해 볼 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성폭력 사례에서도 강간이 6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정신지체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인원수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 가해자의 인원은 1명인 경우가 69.2%, 3명 이상인 경우가 23.1%이며, 2명인 경우는 7.7%로 드러났다.

<표 14> 성폭력 가해자의 인원

범주	빈도	%
1명	9	69.2
2명	1	7.7
3명 이상	3	23.1
합계	13	100.0

정신지체인이 당한 성폭력의 피해 횟수는 <표 15>와 같다. 성폭력을 당한 횟수는 2회 이상이 69.2%, 1회가 30.8%였다.

<표 15> 성폭력 피해 횟수

범주	빈도	%
1회	4	30.8
2회 이상	9	69.2
합계	13	100.0

2002년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78명 중 성폭력 피해 횟수가 한 번이 33.3%로 가장 많았고, 세 번과 지속적인 경우가 각각 15.4%, 두 번이 14.1%, 다섯 번 이하와 10번 이하가 각각 7.7%로 나타났다(이현혜, 2002). 이 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이 정신지체인에게 성폭력을 하기 위해 취한 유인 방법은 <표 1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가 악용한 피해자 유인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35.7%이고, 기타가 21.4%, 현금이 21.4%, 현물이 14.3%, 그냥 납치하는 경우가 7.1%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보자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며 피해당한 즉시 제보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는 가해자의 유인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표 16> 성폭력을 위해 취한 유인 방법(복수 응답)

범주	빈도	%
현물(음식 등)	2	14.3
현금	3	21.4
납치	1	7.1
기타	3	21.4
알 수 없음	5	35.7
합계	14	100.0

정신지체인에게 성폭력의 첫 피해가 발생된 시기는 <표 17>과 같다. 성폭력의 첫 발생 시기는 20세 이상과 알 수 없음이 각각 38.5%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이 15.4%, 10세 이상~20세 미만이 7.7%로 나타났다.

<표 17> 성폭력 첫 피해 발생 시기

범주	빈도	%
10세 미만	2	15.4
10세 이상~20세 미만	1	7.7
20세 이상	5	38.5
알 수 없음	5	38.5
합계	13	100.0

본 연구에 의하면, 10세 미만에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두 건이나 있었다. 한 건은 9세부터 여러 동네사람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였다. 다른 한 건은 5세부터 동네노인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였는데, 가해자가 한 동네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5~6년간 은폐되어 오다가 한 주민의 제보로 드러난 사례였다.

Baladerian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4~10배에 달한다고 하며 여자 정신지체인의 39~68%가 18세 이전에 성폭력

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예자, 2000). 또한 이예자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40건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 중에서 정신지체 아동의 성폭력 비율이 2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 아동보다 더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인 자녀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인지한 부모들은 다음 <표 18>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50%, 사건을 덮으려 한 경우가 25.0%, 기타가 25%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18>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부모의 태도

범주	빈도	%
사건을 덮으려 함	1	25.0
합의 요구	2	50.0
기타	1	25.0
합계	4	100.0

성폭력 피해자 부모의 태도가 나타난 상담 사례는 4건이었다. 그 중 한 건은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자녀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례였다. 피해자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우유를 배달하는데, 경비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 가해자 사직을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였다. 이는 부모의 생계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활복지관에 다니는 정신지체 3급인 여성이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아는 아저씨에게 10년 이상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회복지사가 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 여성의 부모가 이에 소극적이어서 고소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였다. 그 외에 부모들이 피해자의 장애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쉽게 포기해 합

의로 해결하거나,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찰의 태도에 대한 상담 문의도 있었다. 정신지체 2급인 한 여성은 복지관에 같이 다니는 38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화간이 아니냐는 태도였으며, 심지어는 “가해자가 집안도 괜찮으니 차라리 결혼시켜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또한 정신지체 2급인 여성이 작업장에서 근무 도중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지만, 조사해 본다 고만 하고 아무 진척이 없다고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정신지체인들이 당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표 19>와 같다. 학교폭력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폭력이 76.9%, 집단따돌림(‘왕따’)이 15.4%, 언어적 폭력이 7.7%로 나타났다. 신체자유권 침해의 다른 유형에서와 같이 학교폭력에서도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9> 학교폭력의 유형(복수응답)

범주	빈도	%
집단따돌림(‘왕따’)	2	15.4
신체적 폭력	10	76.9
언어적 폭력	1	7.7
합계	13	100.0

정신지체인이 직장 내에서 당하는 폭력 유형은 <표 20>과 같다. 직장에서의 폭력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87.5%,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12.5%로 나타났다. 직장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들은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신체적인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0> 직장 내 폭력 유형

범주	빈도	%
신체적 폭력	7	87.5
언어적·정서적 폭력	1	12.5
합계	8	100.0

다음은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 사례들이다.

(1)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17세, 의뢰인: 제보에 의해 방송국에서 의뢰

피해자는 전봇대 옆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음식물을 주워 먹고 다녀 동네에서 ‘땅거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집에 가보면 가족들이 아이를 버리고 이사라도 나간 듯 온 집안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고, 온기 하나 없는 집안 한 구석에서 말도 잘 못하는 장애아가 혼자 누워 있었다.

(2)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17세, 의뢰인: 어머니

피해자가 특수반 특수교사에게 폭력을 당하였다. 먹살을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교사가 컴퓨터실에서 때리고 드라이버로 문을 잠그고는 “여기서 하루 종일 울고 있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그만 좀 때리라고 피해자가 교사의 팔을 잡았더니, 반항한다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학교장에게 이를 말했으나 부인하였다.

(3) 피해자: 정신지체 등급불명/여성/14세, 의뢰인: 본인

피해자는 여러 사람에게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가해자는 82세 백○○, 51세 이○○, 18세 이○○, 환경미화원 황○○, 27세 장○○ 등 5명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이나 사탕 등을 주고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하였다.

(4) 피해자: 정신지체 2급/여성/20세, 의뢰인: 고모

동네 이장(할아버지뻘)이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였다. 그 후 입덧을 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돈이 없이 정식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낙태 수술을 하였다.

(5) 피해자: 정신지체 등급불명/여성/연령불명, 의뢰인: 시청 공무원

피해자는 양부와 이복 언니들과 살고 있으며, 이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 여성에게 살림을 떠맡기고는 허름한 창고에 기거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목욕도 안 하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 양부는 “머리가 모자라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라고 하였다.

(6) 피해자: 정신지체 1급/여성/43세, 의뢰인: 여동생

결혼 후 시부모들과 시동생이 구박하여 피해자는 당시에 친정에 와 있었다. 시동생이 “농약 먹인다”, “말 안 들으면 강제수용시설에 보낸다”고 하는 등 협박을 자주 하였다.

(7)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연령불명, 의뢰인: 어머니

동네 슈퍼 업주가 피해자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따귀 때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맞았다고 밤에 매일 울었다. 그는 본인이 절대로 안 버렸다면 술을 마시며 며칠 동안 슬퍼하였다. 그러다가 16일 뒤에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 계단에 앉아 사망하였다.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의뢰인은 슈퍼 업주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하였다.

(8)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연령불명, 의뢰인: 누나

피해자가 회사에서 공장장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공장장은 장애인하고 일하다보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매일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9)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15세, 의뢰인: 어머니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는 다른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데도 친구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하였다. 팔뚝 20여 군데를 다치고, 또 다른 반 친구에게 옆구리를 집단 구타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수업시간 중에

어깨를 집중적으로 맞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무마하려고만 하였다.

(10) 피해자(정신지체 부부): 정신지체 등급불명/부부/연령불명, 의뢰인: 익명의 제보를 받은 방송국에서 의뢰

목포 신안군 암태도에서 가해자가 부부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가해자는 12년 동안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피해자 부인은 가해자와 가해자 부인에게 폭력도 당하였다.

(11) 피해자: 정신지체 등급불명/여성/11세, 의뢰인: 친척

동네 노인이 피해자를 5~6세부터 성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장애인이었다. 주민의 증언도 있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가해자는 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7) 노동권 침해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인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2006년 6월 현재, 정부의 지원고용으로 고용된 전체 장애인 61,862명 중에서 정신지체인의 비율이 겨우 3.4%(1,873명)라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들어온 상담 내용을 보면, 정신지체인이 분포되어 있는 일자리도 비장애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겨우 얻은 일자리에서도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권 침해 유형 분석에서는 정신지체인의 직업 유형, 취업 기간, 취업 중 임금 수령 여부, 사전 고지한 임금 지급 이행 여부, 노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한 정신지체인들이 하는 직업의 유형은 <표 21>과 같다.

노동권과 관련해 상담 문의를 한 사례 중에서, 정신지체인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업 유형은 농·임·어업(47.8%)이었고,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이 39.1%였으며, 판매직·서비스직은 13.0%에 그쳤다. 여기에서 알 수 있

<표 21> 직업의 유형(1)

범주	빈도	%
판매직·서비스직	3	13.0
농·임·어업	11	47.8
단순노무직	9	39.1
합계	23	100.0

듯이, 정신지체인들은 일의 성격상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반복적인 노동이 많은 직종에 몰려 있다.

정신지체인의 직업 유형이 이렇게 특정 분야에 몰려 있는 것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직업 개발 등의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나 체계도 거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취업한 정신지체인들의 취업 기간은 <표 22>와 같다. 취업 기간에 있어서, 1년 이상~5년 미만과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각각 26.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2> 취업 기간

범주	빈도	%
1년 미만	3	13.0
1년 이상~5년 미만	6	26.1
5년 이상~10년 미만	6	26.1
10년 이상	2	8.7
알 수 없음	6	26.1
합계	23	100.0

취업 기간을 모른다는 비율도 26.1%로 같았다. 그리고 1년 미만이 13.0%, 10년 이상이 8.7%를 차지하였다.

취업한 정신지체인들의 임금 수령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경우가 60.9%이고, 받았다는 경우는 39.1%에 그쳤다.

<표 23> 임금 수령 여부

범주	빈도	%
받았다	9	39.1
못 받았다	14	60.9
합계	23	100.0

노동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임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담 중에는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동네 이웃의 양계장 일을 전적으로 맡아왔던 정신지체인 부부(경북)는 18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목장에서 25년간 일을 했던 한 정신지체인(전북)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 두 사례의 피해자들은 모두 생계비마저 보호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횡령 당하였다.

‘임금을 받았다’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상담 중에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5년간 일했던 한 정신지체인이 불규칙하게 5~10만 원을 받은 사례와, 한 보호작업장에 다닌 정신지체인이 하루 10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2~3번 잔업을 했지만 월 5만 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정신지체인이 입사할 때 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입사 시 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44.4% , 모른다고 한 사람이 55.6%였다. 여기에서 ‘모른다’라는 답의 의미는 입사 시 업주가 당사자에게 임금에 대해 설명을 잘 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에게는 고지를 했으나

보호자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거나 하는 상황일 경우가 많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24> 입사 시 약속된 임금과의 차이

범주	빈도	%
약속보다 적다	4	44.4
모른다	5	55.6
합계	9	100.0

위와 관련해 의뢰된 상담 중에는 월급 60만 원을 약속받고 충북지재단에 입사하였는데, 재단 측이 월급에서 재단후원금으로 22만 원, 4대 보험료로 8만 원, 적립금으로 20만 원을 빼고 지급해 실제로 받은 월급은 10만 원인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재단 측은 퇴사 시 그 동안 적립해온 150만 원 중에서 겨우 10만 원만 줬다고 한다.

입사 시 임금 조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침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정신지체라는 점을 악용한 업주들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익 창출에만 급급해 아예 고지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노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있었는가에 대해 응답자 모두가 없다고 답하였다.

<표 25> 노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유무

범주	빈도	%
없다	23	100.0
있다	0	0.0
합계	23	100.0

여기에서 ‘적절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은 물론이고, 장애를 고려하는 업주의 태도, 업무 배치, 업무량, 편의시설 등 노동환경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질문했을 때 ‘적절하다’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상담이 의뢰된 사례 중에서는 특히 업주에게 상처를 받아 상담을 해 온 피해자들이 많았다. 업주들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벽까지 잔무를 시키거나,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보호작업장에서는 감사가 나오면 장애가 경한 정신지체인들에게 근무환경이 좋다고 말하게 교육을 하거나 월급은 부모님이 관리하니까 자신들은 모른다고 답하라고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노숙인이나 정신지체인 등 여러 명을 모아 지하실에서 숙식을 시키며 일을 하게 했던 서울의 한 신문배급소에서는 특히 정신지체인들에게 “저는 장애인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하나만 팔아주세요.”라는 문장을 암기시켜 주간지뿐만 아니라 화장지나 칫솔 등의 생활용품도 팔게 강요하였다. 게다가 신문배급소 업주는 쉼터로 돌아가려는 장애인에게 쉼터로 가면 갇힐 것이라는 등의 감언이설을 하며 비장애인 동료들 감시자로 붙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배급소 업주는 급여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내라, 비누나 반찬을 사라, 회식비를 내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들 중에는 업주에게 “꼴 보기 싫다”, “병신새끼 거뒤흔더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정신지체인 직원을 대하는 업주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상담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지체인들은 일할 기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업주들은 정신지체라는 장애 특성을 악용해 금전적인 것은 교묘히 속이고 노동 강도는 높이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지체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현재 이 편견은 너무나 견고해 빠른 시간 내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관련 시민 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정부의 관련법 제정이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정신지체인의 노동권 확보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느냐 시설로 가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신지체의 특성을 악용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노동권 침해의 주요 사례들이다.

(1) 피해자: 정신지체 3급/여성/23세, 의뢰인: 사촌

피해자는 17세부터 인근에 있는 옷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공장 업주는 5만 원, 10만 원 등 불규칙하게 월급을 주었고, 때때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업주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연체료를 떠넘기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정신지체 3급)까지 공장에 나와 일을 하라고 종용하고 새벽까지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2)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23세, 의뢰인: 형제

피해자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일반학교에서 초등 과정을 마친 후 집에 있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전남 목포에 있는 염전에서 일을 하였다. 월 80만 원 정도의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는 결국 염전에 있는 물을 퍼 올리는 장치에 목이 걸려 숨졌다.

업주는 이를 과실로 주장하였으나, 살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경찰은 계속해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었고 사업주는 집을 팔아도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니 이것으로 합의하겠다고 하였다.

(3) 피해자: 정신지체 3급/부부/57세·46세, 의뢰인: 아들

피해자 부부는 이웃인 양계장 주인의 설득으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18년 동안 부부는 양계장 옆 허름한 창고에서 기거하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양계장의 모든 일을 도맡아했으나,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업주는 18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시켰고, 피해자 부부의 생계비와 장애인수당까지 6년간 횡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행도 일삼았다. 의뢰인은 정신지체인 학대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부모의 상황을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4)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47세, 의뢰인: 형

피해자는 목장에서 26년간 일하였다. 임금도 받지 못하였고 12년간 생계비도 업주가 찾아서 썼다. 그 돈이 6천만 원 정도나 되었다.

그러나 업주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당시에 피해자는 시설에 우선 입소되었다. 그러나 업주는 1,6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써서 못 준다고 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5) 피해자: 정신지체 2급/남성/23세, 의뢰인: 피해자 이웃

피해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가출하였다. 형은 인천에 누나는 용인에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힘이 세서 이웃에서 일을 많이 부려먹곤 하였다. 당시 지역 유지(라이온스 회장)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를 자기 집 농사일에 부려먹으며 힘들고 험하고 지저분한 일만 시켰다. 피해자는 농약을 뿌리다가 구토한 적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 말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받는 통장에는 돈이 없었으며, 몽둥이로 맞아 꺾매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채워 놓으라고 하였지만, 이행하지를 않았다.

(6)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34세, 의뢰인: 형제

피해자는 장애인들만 일하는 곳에서 3년간 일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업주가 꼴 보기 싫다며 쫓아내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였다.

사장이 결혼시켜 줄 테니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해서 5백만 원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임수술을 하라고 해서 못 한다고 하였더니, 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였다.

더구나 월급 두 달분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노동사무소에 임금채불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진정을 하였다.

(7)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31세, 의뢰인: 기관 종사자

피해자는 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10개월간 일하였다. 츠실업측은 월급 60만 원을 약속하였지만, 실제 월급은 10만 원만 지급하였다. 월급 60만 원 중에서 적립금 20만 원, 재단 후원금 22만 원, 4대 보험료 8만 원을 제하고 준 것이었다. 피해자 앞으로 월급 통장을 만들어 월 60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바로 빼내가는 형태로 월급을 관리하였다.

초기 두 달은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적립금 15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주었다. 이 회사에는 약 20여명의 정신지체인이 조화나 봉투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8)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연령불명, 의뢰인: 사촌

피해자는 4년간 계약직으로 ㄷ그룹 내 용역 회사에서 일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ㄴ회사에 취업하였다. ㄴ회사에서는 파지 처리나 잡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첫날 출근해서 정화조 청소를 만나절이나 하였다. 그래서 아파서 다음 날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다시 회사에 나가기 꺼려하였다. 회사에서는 퇴직 이유를 자진사퇴라고 하였다.

(9) 피해자: 정신지체 3급/남성/연령불명, 의뢰인: 기관 종사자

피해자는 ㅎ복지타운에서 살다가 한 농장에서 일하면서 살게 되었다. 월 50만 원을 받기로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소 키우는 일을 하

였다. 그러나 5년간 일을 하였지만, 돈으로 월급을 받은 적은 없었다. 다만 농장 주인이 소를 키우다 팔고 땅을 살 때, 일부를 농장 주인과 공동 명의로 샀다.

그 후, 농장 주인이 경기도 연천에 땅 300평을 사서 옮겨 가는 바람에 너무 멀어서 그 곳을 나오게 되었다. 급여를 요구했으나, 농장 주인은 집을 살 때 생각해 보겠다며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농장 주인의 동생과도 3, 4년간 일을 하였다.

8)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의 침해(시설입소 문의)

지역사회에서 정신지체인이 살기 힘든 현실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들을 입소시키고자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문의하고 있다.

2000년~2005년간 장애인 시설 수 증감과 장애유형별 입소자 증감은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우선 2005년 말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두 265개소이다. 2000년의 195개소에 비하면 70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35개소 증가분이 정신지체인 시설이다. 또한 2005년 말 장애인 입소자는 19,668명인데, 이는 2000년 17,215명에 비해 2,453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장애 유형 입소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줄어든 반면, 정신지체인 입소자만 3,706명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치만 보아도 지역사회에서 시설로 내몰리고 있는 정신지체인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최희정, 2006. 12).

본 연구에서 시설입소 문의는 전체 인권침해 사례 건수 159건 중 25건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 중 재산권, 신체자유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시설입소에 대한 문의에 관해서는 ‘입소 문의자는 누구인가’, ‘문의한 시설의 종류는 무엇인가’, ‘기존에 시설입소 경험이 있는가’ 등의 3가지 질문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입소를 문의한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입소 문의자

범주	빈도	%
본인	0	0.0
부모	9	36.0
배우자	0	0.0
형제자매	5	20.0
자녀	0	0.0
친인척	5	20.0
이웃	2	8.0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	4.0
기타	3	12.0
합계	25	100.0

시설입소 문의를 한 사람은 부모가 36.0%, 형제자매가 20.0%, 친인척이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스스로 입소문의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즉, 본인 스스로 시설입소를 결정하기 보다는 주변 가족들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는 것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5)에서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들어오게 된 결정을 본인이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77.9%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강요 때문에 강제로 시설에 들어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중에는 “가족이 시설에 버리고 갔다”, “목욕탕 간다고 했는데 여기였다”, “택시 타고 와 보니 시설이었다” 등 정신지체인 본인이 시설을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를 문의한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 종류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입소를 문의한 시설의 종류에 있어서는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응답자 전원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지체인이 지역사회

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입소문의자들은 대부분 숙식이 가능한 생활시설 문의를 한 것이었다.

<표 27> 입소를 문의한 시설 종류

범주	빈도	%
생활시설	25	100.0
지역사회재활시설	0	0.0
직업재활시설	0	0.0
유료복지시설	0	0.0
합계	25	100.0

상담 의뢰인이 입소시키고자 하는 정신지체인들의 과거 시설입소 경험에 대한 분석은 <표 28>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란 생활시설 혹은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표 28> 시설입소 경험 유무

범주	빈도	%
있다	5	20.0
없다	20	80.0
합계	25	100.0

입소 문의자들이 입소를 시키고 싶어 하는 정신지체인의 80%는 시설입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입소 경험이 있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시설에서 손이 많이 간다고 거부당해서 다른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정신지체인 시설입소 관련 상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의 연령층은 아동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도 남녀 모두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표 29> 시설입소를 문의한 상담 내용

당사 자	상담 연도	연령 (상담 연도 기준)	상담 내용	입소 기간
남성	2000	25세	경제적으로 돌볼 여유가 없다.	장기
남성	2000	6세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돌볼 수가 없다.	장기
여성	2002	30세	돌볼 사람이 없다	장기
여성	2002	18세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 입소를 원한다.	장기
남성	2003	12세	부모가 이혼하였고 친척이 돌볼 수가 없다. 학교 등의 지원과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	장기
남성	2003	23세	아버지의 학대가 심하여 다른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단기
여성	2003	34세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형제는 돌볼 수가 없다.	장기
남성	2003	15세	앵벌이, 도박, 보호처분을 받는 등 계속 말썽이다. 그러다 교도소 갈까 두렵다. 차라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장기
남성	2003	21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고교 졸업 후 갈 곳이 필요하다.	장기

<표 29> 시설입소를 문의한 상담 내용(계속)

당사자	상담연도	연령 (상담연도 기준)	상담 내용	입소 기간
남성	2003	24세	정신병원 퇴원 후 갈 시설이 필요하다.	장기
남성	2003	초 6	아버지가 돌보고 있으나,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 시설에 보내고 싶다.	장기
남성	2003	중 1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하다. 학교가 있는 시설에 보내고 싶다.	장기
남성	2003	40대 후반	입소시설을 문의한다.	장기
남성	2003	22세	부모가 이혼하였고 친척이 돌볼 수가 없다.	장기
여성	2003	5세	잠시 동안 맡길 곳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만 가 있을 곳이 있는가?	단기
여성	2003	36세	돌볼 사람이 없다.	장기
여성	2003	17세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딸을 돌보기가 어렵다. 아내는 딸을 17년 동안 돌보면서 우울증에 걸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기

<표 29> 시설입소를 문의한 상담 내용(계속)

당사자	상담연도	연령 (상담연도 기준)	상담 내용	입소 기간
여성	2003	?	돌볼 사람이 없다.	장기
남성	2004	55세	부모가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돌볼 수 없다.	장기
남성	2004	55세	부모가 사망하였고 형제는 돌볼 수가 없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	장기
여성	2005	36세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수술해야 한다. 단기로 가 있을 곳이 필요하다.	단기
남성	2005	10대	남편의 청각장애와 아이의 장애가 버겁다.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싶다.	장기
남성	2006	20세	부모가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시설에 보내려고 하였다. 당사자는 시설 경험이 있 으며,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대신에 부모 가 방을 얻어주기를 원하였다.	?
여성	2006	42세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을 원한다.	장기
여성	2006	?	함께 살던 목사가 폭행을 하므로 다른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장기

시설입소를 위한 정보를 문의한 사람들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머물 곳을 원하였다. 그리고 돌보던 가족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 단기간 있을 곳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기거하던 곳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시설입소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입소 문의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a) 돌보던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형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b) 생계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c) 부모나 가족의 장애 때문에 돌보기 힘든 경우
- (d) 교육, 치료 등이 가능한 시설을 문의하는 경우
- (e) 폭력 때문에 별도의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해, 시설입소 문의는 대부분 가족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부담과 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생활시설의 기능은 아주 초보적인 의식주 해결에 머물러 있어, 이외에 자립생활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머물 곳으로 시설에 대하여 문의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지체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시설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심층 분석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006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연구자들이 인권침해 피해자인 정신지체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 참여자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인권침해의 7가지 유형 중에서 사례 수가 최소한 10건을 넘는 유형은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총 159건이었다. 이 4가지 유형 중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는 시설입소에 관한 문의여서 대응 과정의 분석이 곤란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9건 중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고 그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의 분석이 가능한 3가지 유형 43건을 골라 심층면접을 하였다.

3) 면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지침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의 침해 정도, 대응 과정 및 현재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면접지침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 간에 협의를 거친 후, 수정한 면접지침을 가지고 2006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절하지 못한 문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은 연구자들 간에 재협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최종 면접지침의 구성 내용과 문항 번호는 <표 30>과 같다(부록 A 참고). 조사 시 면접지침 문항을 정신지체인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0> 면접지침의 구성 내용과 문항 번호

구성 내용	문항 번호
일반적 특성	1 ~ 5
재산권	6 ~ 12
신체자유권	13 ~ 16
노동권	17 ~ 27
사건의 대응 과정	28 ~ 35
현재 상황	36 ~ 37

조사 참여자 43명과는 전화 연락을 하여 사전에 약속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직접 정신지체인을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였다. 면접이 끝난 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주어졌다.

4) 자료 분석

일반적 특성, 재산권·신체자유권·노동권의 침해, 대응 과정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대답을 범주화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2. 연구 결과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참여자의 구체적인 배경 변인별 분포는 <표 3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참여자 총 43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21명(48.8%), 여성이 22명(51.2%)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이상~20세 미만이 3명,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2명,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5명, 40세 이상~50세 미만이 6명, 50세 이상~

<표 31> 조사 참여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변수	범주	빈도	%
성별	남	21	48.8
	여	22	51.2
연령	10세 이상~20세 미만	3	7.0
	20세 이상~30세 미만	12	27.9
	30세 이상~40세 미만	15	34.9
	40세 이상~50세 미만	6	14.0
	50세 이상~60세 미만	5	11.6
	60세 이상	2	4.7
지역	서울특별시	5	11.6
	인천광역시	3	7.0
	대전광역시	1	2.3
	대구광역시	1	2.3
	경기도	4	9.3
	강원도	1	2.3
	충청도	11	25.6
	경상도	4	9.3
	전라도	13	30.2
장애 등급	1급	3	7.0
	2급	18	41.9
	3급	13	30.2
	등급 모름	8	18.6
	미등록	1	2.3
학력	무학	17	39.5
	초졸	8	18.6
	중졸	7	16.3
	고등학교 재학 중	2	4.7
	고졸	9	20.9

60세 미만이 5명, 60세 이상이 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5명, 인천광역시 3명, 대전광역시 1명, 대구광역시 1명, 경기도 4명, 강원도 1명, 충청도 11명, 경상도 4명, 전라도 13명이었다.

장애 등급별로는 1급이 3명, 2급이 18명, 3급이 13명이었다. 학력은 상위 단계의 중퇴의 경우 하위 단계의 졸업으로 처리하였는데, 무학이 17명, 초등학교 졸업이 8명, 중학교 졸업이 7명, 고등학교 재학 중이 2명, 고등학교 졸업이 9명이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에 대한 침해 유형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중 한 가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한 비율은 51.1%이며,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중 두 가지 이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한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표 32> 인권침해 유형

범주	빈도	%
재산권	4	9.3
신체자유권	17	39.5
노동권	1	2.3
재산권+신체자유권	7	16.3
재산권+노동권	1	2.3
신체자유권+노동권	7	16.3
재산권+신체자유권+노동권	6	14.0
합계	43	100.0

한 가지의 권리 침해 중에서는 신체자유권의 피해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권 9.3%, 노동권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는 재산권과 신체자유권의 침해가 16.3%, 신체자유권과 노동권의 침해가 16.3%로 나타났고, 재산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동

시에 입은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모두를 침해당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중·삼중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신체자유권 침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지체인의 신체가 인권침해의 공간이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

재산권의 침해는 정부보조금의 유용 여부, 명의도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기타(보상금 착복 등)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침해 유형을 알아 본 결과, 18명이 재산권과 관련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명 중에는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종류에 대하여 중복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 33>, <표 36>, <표 39>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게 되었다.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보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인수당 등)을 받았다가 37.2%로 나타났으며, 받지 않았다가 25.6%, 모른다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표 50 참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신지체인의 기초적인 생계조차도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

범주	빈도	%
예	16	37.2
아니요	11	25.6
모름	16	37.2
합계	43	100.0

정부보조금 관리는 누가 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혈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계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31.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친인척이 관리하고 있다가 12.5%, 이웃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각각 6.3%로 나타났다.

<표 34> 정부보조금 관리자(2)

범주	빈도	%
가족 혈연	7	43.8
친인척	2	12.5
직장 관계자	5	31.3
이웃	1	6.3
본인	1	6.3
합계	16	100.0

정신지체인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뜻대로 정부보조금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뜻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분만 본인 뜻대로 사용했다가 18.8%, 다른 사람이 관리는 했지만 본인 뜻대로 사용했다와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서 사용했다가 각각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조차도 정신지체인 본인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신지체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명의도용과 관련된 피해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에 의하면, 휴대전화와 관련된 피해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의 이중 피해가 27.3%, 부동산과 신용카드 피해가 각각 9.1%, 기타가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는, 재산권의 침해자들이 숫자

<표 35> 정부보조금의 사용 방식

범주	빈도	%
본인 뜻대로 사용하였다	1	6.3
다른 사람이 급여를 관리했으나 본인이 뜻대로 사용하였다	1	6.3
다른 사람이 급여를 관리하고 그 중 일부만 본인에게 주었다	3	18.8
본인이 전혀 뜻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11	68.8
합계	16	100.0

<표 36> 명의도용 피해의 내용

범주	빈도	%
신용카드	1	9.1
휴대전화	4	36.4
부동산	1	9.1
신용카드+휴대전화	3	27.3
기타	2	18.2
합계	11	100.0

와 서류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명의도용을 한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36.4%로 가장 많았고, 직장 관계자와 친구가 각각 18.2%, 친인척, 이웃, 모르는 사람이 각각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재산권 침해 역시, 정신지체인과 대인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반복 피해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 피해가 없다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한 사람에 의한 반복 피해를 입었다가 36.4%, 2인 이상의 반복 피해가

<표 37> 명의도용자

범주	빈도	%
가족 혈연	4	36.4
친인척	1	9.1
직장 관계자	2	18.2
친구	2	18.2
이웃	1	9.1
모르는 사람	1	9.1
합계	11	100.0

<표 38> 명의도용의 반복 피해 여부

범주	빈도	%
반복 피해 없음	5	45.5
동일한 사람에 의한 반복 피해	4	36.4
2인 이상의 반복 피해	1	9.1
피해 있으나 반복 피해 유무 모름	1	9.1
합계	11	100.0

있었다가 9.1%,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가 9.1%로 나타났다. 재산권의 경우 반복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한 번의 피해라도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지체인의 재산(신용도 포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버려, 더 이상 재산권의 피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의도용 외의 재산상 피해의 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금 피해와 기타 피해가 각각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자유권 침해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의 반복 피해 여부의 결과는 다음 <표 4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입은 정신지체인

<표 39> 명의도용 외의 재산상 피해 내용

범주	빈도	%
보상금	1	50.0
기타	1	50.0
합계	2	100.0

<표 40> 신체자유권 침해의 반복 피해 여부

범주	빈도	%
반복 피해 없음	1	2.7
동일인에 의한 반복 피해	21	56.8
2인 이상에 의한 반복 피해	15	40.5
합계	37	100.0

중 반복 피해가 없었다는 불과 2.7%로 나타났으며, 동일인에 의해 반복 피해를 입은 경우가 56.8%, 2인 이상에 의한 반복 피해의 경우가 40.5%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이 반복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인 이상에 의한 반복 피해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반복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나 다른 가해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이상현, 2004).

학대와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학대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게 되거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일인에게 학대를 반복해서 겪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 대들지 못하는 일종의 복종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미영, 2004; 홍창희, 1997; Seligman, 1976). 신체자유권과 같은 인권의 침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정신지체인 역시 이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장소로는 가정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직장이 1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지체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라는 응답이 13.5%, 학교가 2.7%, 파출소가 2.7%이었다. 신체자유권의 침해가 일어난 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가정과 직장 두 곳에서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비율이 10.8%로 나타났으며, 학교와 기타가 8.1%로 나타났고, 가정과 지역사회 내(이웃), 직장과 학교가 각각 2.7%이었다.

<표 41> 신체자유권 침해 장소

범주	빈도	%
가정	15	40.5
직장	6	16.2
피해자가 사는 지역사회 내	5	13.5
학교	1	2.7
파출소	1	2.7
가정과 직장	4	10.8
가정과 지역사회 내(이웃)	1	2.7
직장과 학교	1	2.7
학교와 기타	3	8.1
합계	37	100.0

신체자유권의 침해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자가 가족 혈연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관계자라는 응답은 2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가 13.5%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는 응답이 5.4%, 이웃이라는 응답이 2.7

<표 42> 신체자유권 침해자(2)

범주	빈도	%
가족 혈연	12	32.4
친인척	4	10.8
직장 관계자	9	24.3
같은 학교 친구	2	5.4
이웃	1	2.7
모르는 사람	5	13.5
가족+이웃	2	5.4
이웃+모르는 사람	1	2.7
직장+학교+모르는 사람	1	2.7
합계	37	100.0

%이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가족과 이웃이라는 응답이 5.4%, 이웃과 모르는 사람, 직장 관계자와 같은 학교 친구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각각 2.7%로 나타났다.

Goffman(김용환 역, 1995)은 ‘오점(stigma)’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더 배척당하며,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표 42>의 결과는 정신지체인과 대인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관계에서 더 많은 신체자유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신체자유권 침해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이중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2%이었다. 그

외에 기타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 학교폭력과 기타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 사람이 2.7%로 나타났다.

<표 43>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2)

범주	빈도	%
성폭력	6	16.2
가정폭력	9	24.3
직장폭력	8	21.6
학교폭력	1	2.7
성폭력+가정폭력	7	18.9
학교폭력+기타	2	5.4
기타	4	10.8
합계	37	100.0

4) 노동권 침해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15명(다른 인권침해 유형과의 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정신지체인이 재산권(18명)이나 신체자유권(37명)의 침해보다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정신지체인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의 유형에 대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농업, 어업 및 축산업 단순근로자였던 사람이 53.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40.0%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에 종사했다는 사람이 6.7%이었다. 이처럼 직업 분포가 다양하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에 유입된 정신지체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4> 직업의 유형(2)

범주	빈도	%
농업, 어업 및 축산업 단순근로자	8	53.3
단순노무직 근로자	6	40.0
주부(가사)	1	6.7
합계	15	100.0

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4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의라고 대답한 사람과 강제에 의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26.7%씩으로 나타났다.

<표 45> 일을 하게 된 경위

범주	빈도	%
자의	4	26.7
강제	4	26.7
소개	7	46.7
합계	15	100.0

노동조건에 관한 사전 고지 내용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53.3%로 나타났으며, 임금에 대해서만 들었다는 사람이 33.3%,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3.3%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은 노동조건에 대해 말해 줘도 모르는 존재라는 낮은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 기간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3%,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3%, 5년 이상~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로

<표 46> 노동조건에 관한 사전 고지 내용

범주	빈도	%
근로조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함	8	53.3
임금에 대해서만 들음	5	33.3
모르겠음	2	13.3
합계	15	100.0

<표 47> 노동 기간

범주	빈도	%
1년 미만	2	13.3
1년 이상~5년 미만	2	13.3
5년 이상~10년 미만	1	6.7
10년 이상	10	66.7
합계	15	100.0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이 노동권의 침해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과 관련하여 강압적 요소가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을 하면서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이었다.

<표 48> 노동에 관련된 강압적 요소 유무

범주	빈도	%
있다	13	86.7
없다	2	13.3
합계	15	100.0

노동에 대한 강압적 요소가 있었던 사람 중 본래의 업무 이외에 다른 강제 노동이 없었던 1명을 제외한 후, 업무 이외의 강제 노동의 내용에 대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외 근무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직원에 비해 고되고 더러운 일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25.0%이었다. 시간 외 근무를 한 사람 그리고 시간 외 근무와 장애를 이용한 영리 추구에다가 부가적 상품판매까지 한 사람은 각각 8.3%로 나타났다.

<표 49> 업무 이외의 강제 노동의 내용

범주	빈도	%
시간 외 근무	1	8.3
다른 직원에 비해 고되고 더러운 일	3	25.0
시간 외 근무+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	7	58.3
시간 외 근무+장애를 이용한 영리 추구+부가적 상품판매	1	8.3
합계	12	100.0

이는 노동시장에 유입된 정신지체인이 강도 높은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를 이용한 영리 추구하고 같은 형태의 강제 노동은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을 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식주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가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의식주와 현금을 제공받았다는 13.3%이었고, 현물 제공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과 현금과 현물을 제공받았다는 사람은 각각 6.7%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접근한 정신지체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인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고 보

<표 50> 노동의 대가의 내용

범주	빈도	%
대가 없음	3	20.0
의식주 제공	8	53.3
현물 제공	1	6.7
의식주+현금 제공	2	13.3
현금+현물 제공	1	6.7
합계	15	100.0

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노동의 대가로 의식주·현물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긴급출동 SOS 24’의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의 짓밟힌 50년’ (‘긴급출동 SOS 24’ 현실-선정성 논란 속 큰 반향, 2006. 5. 10)과 같이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의식주만 제공받으면서 학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가 시급하다.

일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고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현금을 제공받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기타가 각각 33.3%이었다.

<표 51> 대가로 받은 현금의 액수

범주	빈도	%
만 원 미만	1	33.3
30만 원 이상	1	33.3
기타	1	33.3
합계	3	100.0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처음 두 달간은 30만 원씩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만 원 미만의 현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제공받은

사람 중에서도 본인 뜻대로 사용했다가 66.7%로 나타났으며, 33.3%는 본인이 전혀 뜻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를 입은 후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고 나서 일을 그만 두게 된 것은 86.7%이었으며, 일을 계속 한 비율도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피해 후 퇴직 여부

범주	빈도	%
예	13	86.7
아니요	2	13.3
합계	15	100.0

피해를 입고도 일을 계속 한 2명을 제외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퇴직 시에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의 개입 과정에서 그만두었다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그만두었다와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만두었다가 각각 7.7%이었다.

<표 53> 퇴직 시 본인 의사 여부

범주	빈도	%
스스로 그만 두었다	1	7.7
제3자의 개입 과정에서 그만두었다	11	84.6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만두었다	1	7.7
합계	13	100.0

피해를 입고도 일을 계속 한 2명을 제외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4>

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을 그만 두게 된 100%가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만 두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퇴직금 수령 여부

범주	빈도	%
받았다	0	0.0
받지 못했다	13	100.0
합계	13	100.0

5) 대응 과정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정신지체인의 감정적 수용 상태를 알아보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피해자의 느낌

범주	빈도	%
무서웠다	11	25.6
죽고 싶었다	7	16.3
슬펐다	5	11.6
화가 났다	9	20.9
가해자가 미웠다	8	18.6
기타	3	7.0
합계	43	1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서웠다’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화가 났다’가 20.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가해자가 미웠다’가 18.6%, ‘죽고 싶었다’가 16.3%, ‘슬펐다’가 11.6%, ‘기타’가 7.0%이었다. ‘죽고 싶었다’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적지 않았고, 피해 당

시 대부분의 정신지체인이 극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Durkheim(김충선 역, 1994)은 광범위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통해, 자살은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개인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이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신지체인의 ‘죽고 싶었다’는 감정 수용 경험은 정신지체인이 사회적 타살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정신지체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았다’가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알렸다’가 32.6%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7.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망갔다’가 4.7%, ‘신체적으로 저항했다’가 2.3%, ‘기타’가 2.3%로 나타났다.

<표 56> 피해 시 대응 방식

범주	빈도	%
참았다	22	51.2
도망갔다	2	4.7
주위 사람에게 알렸다	14	32.6
경찰에 신고했다	3	7.0
신체적으로 저항했다	1	2.3
기타	1	2.3
합계	43	100.0

‘참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학대와 실패를 반복하여 겪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학대에 대한 무기력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홍창희,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본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관심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알려 주었다’가 25.6%로 두 번째로 높았고, ‘동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가 20.9%,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해 주었다’가 4.7%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경우가 4.7%, 이야기는 들어 주었지만 별 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경우가 4.7%로 나타났다.

<표 57> 피해 시 주위 사람들의 반응

범주	빈도	%
무관심	17	39.5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2	4.7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알림	11	25.6
동사무소나 경찰에 신고	9	20.9
피해 받음을 당연시 여김	2	4.7
기타(이야기만 들어주고 행동은 안 취함)	2	4.7
합계	43	100.0

이와 같이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위 사람의 반응 중 무관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일종의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관자 효과란 버스 속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소매치기를 붙잡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는 경우와 같은 태도를 말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의 원인을 책임의 분산, 애매성, 평가 우려의 3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정홍수, 199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방관 역시 자기가 돕지 않아도 누군가가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의 분산과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한다면 나도 역시 그런 사태를 위급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매성과 남들이 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평가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갈 데도 없는 불쌍한 정신지체인을 먹여 주고 재워 줬는데, 그 사람을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평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후 대응 시점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에 알려진 후에야 피해 상황에 대응이 시작되었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이 지난 후가 2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피해가 발생한 즉시라고 한 경우는 16.3%,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8> 피해 후 대응 시점

범주	빈도	%
즉시	7	16.3
1년 미만	3	7.0
1년이 지난 후	12	27.9
외부에 알려진 후	21	48.8
합계	43	100.0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았다’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법적 지원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다’가 16.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원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11.6%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문제해결 과정에서 받은 지원의 종류

범주	빈도	%
상담과 심리치료	14	32.6
상담과 쉼터입소	1	2.3
상담과 시설입소	5	11.6
상담과 취업 알선	2	4.7
상담과 기타 지원 서비스	2	4.7
모름	2	4.7
지원 없었음	5	11.6
실무적인 도움(법적 지원 등)	7	16.3
상담과 시설입소+취업 알선	1	2.3
상담과 시위, 방송 인터뷰	1	2.3
상담과 시설입소, 장애인 등록, 수급권자가 됨	1	2.3
상담과 시설입소, 법적 지원	2	4.7
합계	43	100.0

이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소의 비율(20.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신지체인이 피해 상황으로부터 구조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산권 침해의 일부 사례와 같이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6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8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이 높은 것 역시 피해 사례가 외부에 알

려지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0>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여부

범주	빈도	%
예	32	80.0
아니요	8	20.0
합계	40	100.0

가해자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가해자에게로 돌아갔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와 분리되었다던 사람 중 9.4%가 다시 가해자에게로 돌아갔다고 응답하였다.

<표 61> 분리 조치 후 가해자에게로 돌아갔는지의 여부

범주	빈도	%
예	3	9.4
아니요	29	90.6
합계	32	100.0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간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했다는 응답이 66.7%, 새로운 곳이 적응하기 힘들어서가 33.3%로 나타났다.

<표 62> 가해자에게 돌아간 이유

범주	빈도	%
가해자가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함	2	66.7
새로운 곳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1	33.3
합계	3	100.0

6) 현재 상황

인권침해를 입은 정신지체인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피해 사건의 해결 결과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63>과 같다.

<표 63> 사건의 해결 결과

범주	빈도	%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17	39.5
합의나 보상을 받았다	10	23.3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	7	16.3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다	3	7.0
합의나 보상 받았다+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	3	7.0
전학을 갔다	2	4.7
모른다	1	2.3
합계	43	1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나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이 23.3%,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합의나 보상과 함께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7.0%,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7.0%, 전학을 갔다는 응답이 4.7%, 모른다는 응답이 2.3%이었다.

합의나 보상, 처벌 등의 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민간 차원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상체계와 같은 사회적 안전장

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피해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후 현재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6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후유증이 없다가 23.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18.6%,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이 14.0%, 신체적 후유증이 11.6%, 신체적·경제적 후유증이 7.0%에게 나타났다.

<표 64> 피해 후유증

범주	빈도	%
후유증 없음	10	23.3
신체적 후유증	5	11.6
정신적 후유증	11	25.6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8	18.6
신체적+경제적 후유증	3	7.0
정신적+경제적 후유증	6	14.0
합계	43	100.0

이는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의 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이 극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지속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은 뒤 이 기억을 반복하여 떠올리는 과민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김순진·김환, 2003). 신체적 후유증과 경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관리와 금전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정신지체인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1. 연구 방법

정신지체인 관련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대응방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24일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에는 정신지체인 그룹홈 및 사업장 운영자 1명, 특수학교 교사 1명, 정신지체인 부모 2명이 참여하였다.

면접은 사전에 준비한 면접지침(부록 B 참고)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접이 끝나고는 조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이후에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던 토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다음은 초점집단면접에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연구 결과

1) 현 상황의 파악과 문제의 제기

정신지체인은 장애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못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외관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비장애인처럼 대하고, 비장애인에 대한 기대치로 대한다. 당사자 또한 차별받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가정에서부터 인격적인 대우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인이더라도 반말을 한다. 그래서 반말에 익숙해 있는 정신지체인들은 사업장에 처음 오더라도 반말부터 사용한다.

일상적인 차별대우가 정신지체인에게도 익숙해져 있다.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례>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홍 씨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다. 82세 노인이 홍 씨에게 버릇없이 젊은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비키라고 하였다. 이에 홍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르신이 화를 내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홍 씨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노인이 지팡이로 허벅지를 툭툭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에 홍 씨는 지팡이가 보행 보조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가격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화가 났다. 주변에서는 노인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거들기 시작하였다. 홍 씨는 평소에 방어 수단으로 침을 뱉거나 밀거나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에 지하철에서 하차 중이던 할아버지를 선로로 밀었다. 홍 씨는 할아버지를 선로로 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모른다. 단순히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때려서 밀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정신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집안에만 가두어둘 수도 없다. 그러므로 외관상 다른 차이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해를 해주었으면 한다.

<사례> 한 면접 참여자의 아들은 일반 고등학교 특수반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조차도 능력을 평가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아들은 산만하고 자폐 성향이 높고 시간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평가에서 탈락되었다. 결국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갈 곳이 없다. 현재 부모들이 돈을 모아 만든 곳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하지 않았다면 갈 곳이 없다. 그곳이 없었으면 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만 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은 2년 과정이며,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작업 능력이 있는 정신지체인만 다닐 수 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게 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갈 곳을 고민하고 찾아야 될 뿐,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립지원센터 등에서 졸업생

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사와 부모만 고민하고 있다. 대다수가 부모들이 돈을 직접 내서 보호작업장을 만들지만, 돈 문제와 마음고생이 심각하다.

성인 정신지체인의 작업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 중에서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의 인권 확보 수준이 장애인 중에서 제일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정신지체인에 대한 정책은 없다. 요즈음에 와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경증장애인만 취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시설이 여러 개 있지만, 취업이 아니라 훈련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이면 다 나가야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일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배우고 나와도 일할 곳이 없다.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이후 대책은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사업장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사업 노하우도 없고 정부 시설로 인정받으면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 손을 떠나게 된다. 부모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지체인들이 나이를 먹으면 더 능력이 떨어지니까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인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에서 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신지체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은 월급이라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운동하고 있지만, 정신지체 쪽은 당사자 단체가 없다. 그래서 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신지체인 당사자 단체가 있고 정신지체와 관련해서 지원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서비스·정책의 문제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정신지체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의 복지관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다.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을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하지만, 정신지체인은

장애 특성상 쉽지가 않다. 장애 특성상, 인권 교육과 취업 훈련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취업을 해도 3개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재봉틀 기계 속에서 사람 소리도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하루 종일 형철 조각을 잘라야만 하였다. 그는 그 분위기에 질려 화장실에도 못가고 식사도 못하였다. 보통 직업재활을 이야기 할 때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통합 취업을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지체인은 기본적으로 인권 개념에서 취업을 고려되어야 한다.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참여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일터가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터에서 인권을 요구하면 일터는 정신지체인을 싫어한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투자하면 120%를 요구한다. 정신지체인들 중에서 기능이 좋은 사람이라도 15%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운영자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시설에서 생활하면 돼지 왜 중증이 일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정부도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에게 인권적 관점에서 정신지체인의 취업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한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보면, 대다수가 정신지체인에 대해 모르고, 설사 아는 사람이더라도 관심이 없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을 특수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너무 특수하게 생각하고, 약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을 계속 시켜도 항의하지 않으니까 계속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이 정신지체인이 방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인은 상담과 지원이 생애주기별로 계속되어야 한다.

정책 자체가 성과와 업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건화되어 자주 보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예산 문제로 돌려버린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지체에 관련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기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우면 공무원들에게 업적도 생기고 하는데, 정신지체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2) 대안 제시

실제로 사업장에서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센터에서 정신지체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센터가 있듯이, 정신지체인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인권·고용·주거 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신지체인의 성 문제만 해도 어디에 가도 답이 없다. 문제가 터져서 물어보면 다 떠넘기기 바쁘다. 종합적으로 스크린하면서 대응책을 찾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문가적으로 연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 등,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팀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지체인이 있는 가족에게도 서비스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지체인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필요한 것이다. 가족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정신지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기도 하고 또 가정 형편에 따라 서비스도 달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사는 정신지체인의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 먼저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장애인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으로 반복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정신지체인과 성관계를 맺는 비장애인은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폭력에 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당한 방식으로 성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화된 성교육 강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다.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계층인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VI. 논의

1. 연구 결과의 설명 · 의미

첫째, 정신지체인에 대한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침해 실태에 있어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동일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지체인에 대한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의 침해는 각 침해 유형이 이중·삼중으로 겹쳐서 일어나는 중복의 형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에 대한 선행 연구(이예자, 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2006; 최은경, 2000)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신체자유권에 대한 피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신지체인의 신체가 인권침해의 공간이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람보다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밀접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offman(김용환 역, 1995)은 ‘오점’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더 배척당하며,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대인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사람에게서 인권침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오점의 가시성을 극명하게 생산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지체인이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폭력과 같은 형태의 인권침해를 반복하면서 점점 자신의 폭력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우리는 우리 중의 어떤 사람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규제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규범들을 학습한다”는 사회규범론을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본다(정홍수, 1995). 이런 맥락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규범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사회 전체임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에게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죽고 싶었다’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수용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16.3%로 나타났다. Durkheim(김충선 역, 1994)은 광범위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통해, 자살은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개인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신지체인의 ‘죽고 싶었다’는 감정 수용 경험은 정신지체인이 사회적 타살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 본 결과는 무관심 39.5%, 피해 받음을 당연히 여김 4.7%, 기타(이야기만 들어주고 행동은 안 취함) 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일종의 방관은 내가 돕지 않아도 누군가가 돕게 될 것이라는 책임 분산과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나 역시 그런 상태를 위급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관하는 애매성이 겹쳐 일어나는 일종의 방관자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정홍수, 1995). 특히 ‘갈 데도 없는 불쌍한 정신지체인을 먹여 주고 재워 줬는데, 그 사람을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평가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위 사람의 방관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방관이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재현된 것이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시점을 물어 본 결과는 48.8%가 외부에 알려진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이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한 그가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된다는 점에서 가정 내 폭력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폭력 가해자 중 가족혈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폭력의 피해 장소로 가정이 높은 점, 노동권의 피해 역시 의식주의 제공 비율이 높은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맥락에서 정신지체인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과정 역시 가정 내 폭력의 대응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개입, 가해자와의 분리, 쉼터 제공,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의 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정신지체인에게 사건 해결 결과에 대해 물어 본 결과, 합의나 보상을 받았다가 23.3%,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가 16.3%, 합의나 보상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 비율이 7.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높게 나타난 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상체계 없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그동안은 정신지체인들이 지속적인 피해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권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의 후유증에 대해 질문한 결과, 76.7%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의 침해를 당한 정신지체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순진·김환, 2003). 따라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개입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동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정신지체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2. 권리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 과제

국제 인권 법률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연구서는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인권 규약들 하에서 정부들의 최소한의 핵심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Rosenthal & Sundram(2003)에 의한 그 세계보건기구 연구서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 연구서가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권리 중에서도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a)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와 (b) 장애에 근거한 차별의 방지에 대한 권리를 선택하였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

(1)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이용

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는 (a) 이용할 수 있고 (b) 접근하기 쉽고 (c) 받아들일 수 있고 (d) 적절하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적절히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된 의료·전문 직원’에 의해 ‘충분한 양’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성의 개념은 물리적 접근성의 범위를 넘어서며, 서비스는 요금이 알맞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의료 윤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질의 서비스가 되려면, 서비스가 또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의료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① 개별화된 치료의 권리

정신지체인이 개별화된 치료의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은 (a) 전문가의 최선의 판단에서 그러나 또한 (b)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는, 개인의 요구에 맞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정부의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개별화된 치료의 목표와 요건 중의 하나는 치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②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재활과 치료에 대한 권리

모든 정신지체인의 치료는 각 개인의 자율성과 기능의 유지·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거나 최고의 잠재력을 함양하는 치료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식함은, 보호·관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수준까지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재활을 제공함에 있어, 재활 서비스는 개인이 ‘독립과 기능의 최적 수준에 도달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독립과 사회 통합의 권리

① 최소 제한적인 서비스의 권리

모든 정신지체인은 그의 건강 욕구와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에 적절한, 제한이나 참견을 최소화하는 치료로, 최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최소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치료의 권리는 ‘모든 정신지체인의 치료는 개인의 자율성의 유지·향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하여 강화된다. 치료가 가능한 한 최소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신체적 구속이나 비자발적 격리와 같은 실천에 대한 방지장치로 만들어져 있다. 개인의 의료적 상태에서의 ‘심각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자발적 감금이 허용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목적의 비자발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가 최소 제한적인 대안의 원칙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입소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권리

개인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지의 여부와는 연관되지 않는, 지역사회 통합(또는 사회적 독립)에 대한 권리이자, 또한 이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리이다.

2) 차별의 방지에 대한 권리

(1) 적극적 조치와 적절한 편의

① 적극적 조치

특별 보호 또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법률 하에서의 동등한 보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허용되며, 때때로 필요하다.

② 적절한 편의

적절한 편의의 원칙은 1973년 재활법에서 미국의 차별금지 법률의 일부로서 수립되었고, 현재 미국장애인법에 들어가 있다. 적절한 편의는 ‘특정인과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맞추기 위하여 장치·서비스·시설을 제공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실천이나 과정을 바꾸는 것’으로 미국 법률에서 정의되어 왔다.

적절한 편의의 권리에 관하여, 미국 법률과 유사한 법률을 채택한 국가에서 법제의 증가는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 관계에서 정신지체인은, 정신요법가의 진찰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하여 작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아침에 늦게 도착하고 오후 늦게 시간을 보충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절한 편의에 대한 권리는 공적 편의의 영역에서, 특히 건강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가장 강력하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정부가 모든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정신지체 아동은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한 편의는 정신지체 아동의 욕구에 관하여 부모에게 상담을 제공하거나 일시 위탁에 대해 보상하도록 가족에게 추가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2) 균형의 법칙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

유럽법원(European Court)은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대우의 차이는 단지 합법적 목표를 추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권

리가 제한되어야 할 때, 균형의 원칙은 정부가 적절한 정당한 절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신보건 법률에서 차별 방지의 적용

①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는 의료적·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차별에 대하여 정신지체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가 필요하다.

② 차별로서의 ‘부적당한 후견인’

피해 유무를 떠나 정신지체인 등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후견인을 법원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식의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5; 김희선, 2004). 그러나 정신지체를 이유로 개인이 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어떤 결정, 그리고 그러한 무능력의 결과로 개인의 대리인이 지명되어야 한다는 어떤 결정은 국내법으로 정해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 의한 공정한 청문회 이후에만 내려져야 한다.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후견인의 부적당한 활용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많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법원은 개인이 법적 능력이 정말로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과제나 범위로만 후견인의 권한을 한정하도록 요구받는다. 정신지체인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정신지체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국제 재판소에 의해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국제 차별 법률 하에서 ‘균형’의 원칙이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과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실제 능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그 밖의 권리(정신지체인 클라이언트의 권리)

관청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정신지체인은 그들의 시민권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시설, 프로그램 및 관청으로부터 기금을 제공받는 계약자는 정신지체인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증진시켜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시민권, 헌법상 권리,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들 권리는 다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을 포함한다(Divi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06).

(a) 학대로부터의 자유

- 어떤 종류의 (언어적 · 정신적 · 신체적 · 성적) 학대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홀로 있으려 하지 않는다면 혼자 어떤 장소로 보내지지 않을 권리
- 진정(陳情)을 하고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불필요한 약물 치료, 감금,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조사에 대해 설명된 후에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 당신(정신지체인)이나 그 법적 대리인이 당신이 참여하도록 동의서를 주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을 권리

(b) 사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 친구, 가족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할 권리
-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개인 기록사항 및 기타 기록사항에 대한 비밀의 권리
-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규칙을 정할 권리, 타인의 집에 살거나 타인의 영업소에서 일할 때 그 제공자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

(c) 선택권

- 필요에 맞는 활동, 스케줄, 의료를 선택할 권리
- 삶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
- 원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머리를 할 권리
- 투표할 권리, 사람들이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도울 권리

(d) 정보

- 관청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
- 의사가 당신(정신지체인)이 무엇을 하거나 복용하기를 원하는지 알 권리,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될지 계획하는 것을 도울 권리

(e)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 타인의 행동에 대한 걱정을 포함하여, 제공자가 당신(정신지체인)의 걱정애 귀를 기울이도록 할 권리
- 옹호자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권리
- 지역사회에 일원이 될 권리

(f)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기회

-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데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 금전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정신지체인)을 돕도록 할 권리

3. 권리 증진을 위한 행동 방침

본 절에서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의 자각과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Slye(2003)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 사항과 ‘예일 선언(Yale Declaration, 2003)’을 기초로 하였다.

1) 정보의 수집과 보급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법률·실천은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특정 단계를 밟아야 한다.

- (a) 다른 국가의 법률·정책 중 미국장애인법과 같은 성공적인 법률·실천을 수집·보급하라.
- (b) 성공적인 법률·실천의 예를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온라인에 올려놓으라.

(c) 소비자와 옹호자 가운데에서 정부와 NGO에 의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라.

2) 자원을 증가시키고 우선순위를 매김

(1) 인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원을 이용

정부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은 정신지체인의 권리의 실현과 강조를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법률은 자율성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지체인이 이용 가능한 최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원조하여야 하며, 다음의 특정 단계를 밟아야 한다.

(a) 시설의 이용은 인도적·경제적 이유로 감소되어야 한다.

(b) 재택 개별지원인(personal assistant)의 활용과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준비가 확대되어야 한다.

(c) 시설화의 높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정신지체인에게 주거 배치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보조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어야 한다.

(d) 정부는 멘토르(mentor)와 민간인 대변자와 같은, 후견인 활용에 대한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e) 의사결정의 대리의 법률 원칙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결정의 지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f) 정신지체인과 시설생활인은 투표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3) 정부 직원과 자원의 증가

정부는 정신지체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하여 일하는 직원과 자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정신지체인에게 영향을 주는 영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정부 직원은, 가치명료화, 사람중심의 계획,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시스템 접근법 등과 같은, 정신지체인의 권

리를 향상·강화시키기 위한 현재의 표준과 기술들에 있어서 훈련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위한 대통령위원회’가 1966년 이래 정신지체 영역에서의 국가적 계획을 촉진하고, 전략·정책·프로그램의 발전을 북돋워 왔다(President’s Committe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2003).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위원회는커녕, 정신지체인을 위한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미국의 발달장애관리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 Disabilities) 같은 정부조직조차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소비자가 통제하는 옹호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모든 옹호 노력에 있어서의 소비자 참여가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가족과 기타 동반자는 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NGO는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절대로 필요하다. NGO와 옹호 단체들은 정신지체인의 권리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증대시킬 목적에서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증진시키도록 정부 기관에 로비 활동을 해야 한다.

4) 모델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과정

(1) 모델 프로그램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은, 지역에 의한 통제를 유지하며 어떻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동시에, 소비자·옹호자·정부가 혁신적이고 권리 지향적인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의 이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모델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최상의 실천(best practices)’의 이행을 지지해야 한다.

(2) 모니터링과 보고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정신지체인 권리의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것의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뉜다. 주요 인권 단체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와 보호를 포함하도록 초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이행하여야 한다(Divi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06).

(a) 정신지체인의 학대와 유기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야 하며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공무원, 계약자, 자원 봉사자, 인턴 직원, 체험 학습 학생 등은 원인 불명의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에 대해 관찰되거나 보고되거나 의심스러운 모든 학대·유기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담당 관청은 신속한 조사와 해결을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혐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b)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거나 법률 하에서 경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c) 성실하게 보고한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기소로부터 면책되어야 하며 해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d)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허위 보고는 법률 하에서 경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e) 시설이나 기관은 법률에서의 의무적인 보고 요건과 충돌하는 정책이나 과정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5) 옹호

정신지체인의 권리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옹호 조직의 개발과 지원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 (a) 정부와 NGO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대한 리더십과 공공의 토론을 촉진해야 하며, (b) 정부와 NGO는 지역에 기반을 둔 옹호 조직, 특히 소비자가 통제하는 옹호 조직과 정신지체인의 가족·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조직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옹호는 지역 주민에 의한 옹호, 부모·전문가에 의한 옹호,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기 옹호(자기 권리주장)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역 주민에 의한 옹호

지역사회 내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지체인에 대한 옹호를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내는 활동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주민에 의한 옹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이 절대 필요하며, 복지단체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최선자, 2004).

(2) 부모·전문가에 의한 옹호

부모·전문가들은 정신지체인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의한 옹호는 교육적·직업적·개인적 측면에서 정신지체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평범하면서 자연스러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지원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최선자, 2004).

그러나 advocacy로서의 권리 옹호는 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조언이라는 수동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원·변호라는 능동적인 인권 활동도 포함해야만 한다. 오히려 권리 주장의 지원·변호야말로 그 기본적 가치가 강조되어야만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신혜용 역, 2000).

물론 모든 학대와 인권침해 권리 주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호소와 신고 중에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고, 그러한 사회적 의의에서 권리 주장(투쟁)을 위한 지원과 변호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지원과 변호에는 재판이 포함되는데,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면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권리 주장을 지지해줄 투쟁(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 그것이 뜻하는 단어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명목뿐인 권리 옹호라 할 것이다(신혜용 역, 2000).

(3) 자기 옹호(자기 권리주장)

정신지체인 스스로가 자신들에 관한 권리·이익·복지·요구 등에 대해 주장하는 것으로, 자기 옹호의 기본 전제는 첫째로, 장애인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장애인은 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김혜경, 2002; 최선자, 2004).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할 때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장과 더불어 자기 권리주장이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권리주장 운동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2).

그러므로 정신지체인의 자기 권리주장자들은 사회의 서비스와 지원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권리주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신지체인이 차별로 인하여 시설 수용, 고립, 비웃음, 빈곤, 권리 박탈 등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 정신지체인은 더 이상 이 같은 대우를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제는 여기에 대항하여 그들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권리주장자로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기 권리주장의 내용으로, 정신지체인은 (a) 자기 존중, (b) 자기 결정, (c) 법적인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 (d) 잘못된 체제의 변화, (e)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김정권·김혜경, 1999).

또한 정신지체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뜻을 모아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외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김정권·김혜경, 1999, 2000).

- (a) 정신지체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 (b) 정신지체인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더 이상 무시되지 말고 존중되어야 한다.
- (c) 정신지체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d) 정신지체인의 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적절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 (e) 정신지체인은 직업을 갖기 원하며, 직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 (f) 정신지체인의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g) 정신지체인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위해 완전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법률 등의 개선 방안

(1) 정신지체인의 사회 전반에 걸쳐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 필요

미국에는 정신지체를 비롯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원조 및 권리장전법’이 제정된 반면, 한국의 정신지체인은 그들의 권리에 특별히 전념한, 구속력 있는 법률의 보호가 현재 부족하다(Rosenthal & Sundram, 2003).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법적 보장의 권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지체인이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2005).

이처럼 특정 권리 및 정신지체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적용을 설명하는 데 더하여, 새로운 법률은 정신지체인의 특정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감독 메커니즘의 존재를 납득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a) 국제 인권 법률의 기존의 내용과 모순이 없어야 하고, (b) 인간의 본래부터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해야 하며, (c) 확인·실행 가능한 권리·의무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정확해야 하고, (d) 적절한 경우에, 보고 시스템을 포함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기구를 규정해야 한다.

(2)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빈 선언의 인식의 정신에서, 정신지체인의 권리는 완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다. 새로운 법률은 인권을 이행하는 행동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권리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법률은 보편적이고 공평하며 분명히 정의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공포하여야 한다. 그 법률은, 완전한 이행이 즉시 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신지체인의 대우를 위한 최고 수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3) 새로운 법률·정책·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

정신지체인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및 정부 정책·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정신지체인과 그 옹호자들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포괄적이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동 방침

정신지체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그 밖의 행동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5; 김희선, 2004).

(1) 학대·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중간시설 단계로서의 쉼터 공간의 마련

학대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격리·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어디에도 없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일반 청소년쉼터, 생활 시설에 입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청소년쉼터 중 지방에 위치한 쉼터의 운영자들은 실제로 쉼터 입소자 6, 7명 중 1, 2명 정도는 정신지체가 있거나 경계급 청소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쉼터 생활에서도 이들은 비장애 청소년들에 의해 따돌림과 집단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쉼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노숙 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가정 내 학대로 인해 가출한 정신지체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쉼터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의 마련

정신지체인은 장애 특성상 학대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제보 또는 상담을 받아 학대 상황에 놓인 정신지체인을 만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학대 상황에서 분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막상 갈 곳이 막연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학대 상황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도 역시 전무하다. 그러므로 예컨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같이, 학대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의심이 가는 정신지체인을 위기 상황에서 분리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기관(예: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자립센터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정신지체인에 대한 행정체계의 지원 또는 보호

정신지체는 1급에서 3급까지 있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 다양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지체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장애인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정신지체인 당사자와 그 가족,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의무화하는 행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행정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정신지체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마련

단지 형법적 조항에 의해 횡령, 폭력 및 감금, 상해라는 죄목으로 명명되면서, 정신지체를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장애를 악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을 때 재산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정신지체인에 대한 구타,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5) 정신지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VII. 결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이 당한 —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가 정신지체인을 향해 만들어낸 장애이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특정 가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정신지체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 규범이 극단적으로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방관자이며 가해자이다.

Rawls(황경식 역, 1999)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행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아 온 정신지체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소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지체인들에게 최대의 행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정신지체인의 침해받은 인권들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지체인의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지체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선의’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조금씩 도입해서는 안 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이 정신지체인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사생활을 갖기 위하여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경증’이나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것으로 기술되는 많은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 고지(告知)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동의를 한다. 1999년 7월에 영국 내무부 회의(Home Office Conference) 때 정신지체인에 관련된 동의 문제에 관한 기초연설에서 고등법원 판사(Lord Justice) Henry Brooke는 ‘성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성행위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면에서 그들의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심도(深度) 정신지체인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있지만, 이 점에서조차 동 회의에서 왕실 고문 변호사(Queen’s Counsel) Stephen Silber는 ‘현행 법률은 심도 정신지체인과의 모든 성행위를 금하고 있다(중략) 이것이 제1조와 3조 또는 ‘인권 협정(Conevention of Human

Rights)’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성행위에 대한 그러한 절대 금지는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제8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Leicester & Cooke, 2002).

어떤 경우에 보호자는 정신지체 성인이 꽤히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려 시도하고, 만약에 그들이 기꺼워하지 않거나 강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보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호자라는 것이 꼭 정신지체 성인의 성관계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지식이나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성인이 경증이나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이 대체 섹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그들이 성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도록 보호자에게 요청한다거나 하는 가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보호 전문가의 책임이나 능력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일일 것이다(Leicester & Cooke, 2002).

이것은 성폭력특별법 판례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보인 소극적인 모습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신지체인들이 한 여성 또는 한 남성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 자신의 성은 물론이고 이성의 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다른 한 쪽을 잊지 말 것을 경계하고자 함이다(정진옥, 2003).

노동권에 있어서도, 정신지체인이 노동권의 침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정신지체인의 노동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수급권과 노동할 기회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장애인에게 강요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그러하다.

요는, 정신지체인도 비장애인 모두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정신지체를 지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준다거나 — 호의적인 차원에서 조차 —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다(정진옥, 2003). 물론 정신지체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이중·삼중의 보호막으로 감싸다보니, 이제 정신지체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 보호막이 세상과의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5).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 서울: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 “긴급출동 SOS 24’ 현실-선정성 논란 속 큰 반향”. 인터넷한겨레신문, 2006년 5월 10일.
- 김순진 · 김환 (200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 학지사.
- 김용환 역 (1995). 오점. E. Goffman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 김의자 (2002). “여성장애인의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권 · 김혜경 (1999). 발달지체인의 자기 권리주장 운동. 대구: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아교육복지회.
- 김정권 · 김혜경 (2000). “한국 발달지체인의 자기 권리주장 운동 — ‘더불어 사는 국민’의 의의와 과제 —”. 발달장애학회지, 4, 57-71.
- 김충선 역 (1994). 자살론. E. Durkheim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서울: 청아출판사.
- 김혜경 (2002). “발달지체인 자기 권리주장 운동의 인권 실행과 새로운 사회운동”. 정신지체연구, 4, 233-253.
- 김희선 (2004).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 2004 인권국 상담분석 결과 —,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1-88.
- 문혜숙 (2000).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9, 99-126.
- 신혜용 역 (2000). 함께 알아보시다: 정신지체인의 인권. 阿部美樹雄 編 (1997). よくわかる知的障害者の人權と施設職員のある方. 서울: 충현복지관.

- 엄현정 (2006).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 제3판. 서울: 박영사.
- 이예자 (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정책적 대안”.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편,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12.
- 이현혜 (2004). “정신지체인의 성행동 실태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 2004 인권국 상담분석 결과 —.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6).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회.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정재권 · 고은 (2002). “독일 발달장애인의 성교육과 성에 대한 권리 탐색”. 재활심리연구, 9(1), 103-122.
- 정진욱 (2003). “보호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박탈된 인권: 정신지체인의 성적 권리”. 사목, 291, 38-51.
- 정홍수 (1995). 사회심리학(개정증보판). 서울: 법문사.
- 최선자 (2004).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당사자단체의 방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 2004 인권국 상담분석 결과 —,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89-92.
- 최은경 (2000).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력 사례”.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편,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

- 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 17-28.
- 최희정 (2006. 12). “지역에서 사는 성인 정신지체장애우의 현주소 — 성인 정신지체장애우, 할 것도, 갈 곳도 없다”. 함께걸음, 214, 20-24.
- 홍창희 (1997). “가정폭력과 여성의 정신건강”.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8, 41-58.
- 황경식 역 (1999). 정의론. J.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서울: 이학사.
- 堀江まゆみ (2002). “現代社會における知的障害のある子・人の人権侵害事件”.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編, 虐待はいま..., 東京: 全日本手をつなぐ育成會, 47-56.
- 白河育成園被害者弁護団. (1997). 白河育成園事件に關する緊急連絡書. <http://www1.odn.ne.jp/~aaa08190/jinken/sirakawaAP-1.htm>
- 水戸事件とは. (연도불명). <http://www.iris.dti.ne.jp/~globe/mitojiken.htm>
- 田中耕一朗 (2005). 障害者運動と価値形成. 東京: 現代書館.
- TBS系 金曜ドラマ 『聖者の行進』. (연도불명). <http://www.pluto.dti.ne.jp/~sonnar/rhsite/march/>
- Carr, L. W. (2004, July). Wyatt v. Stickney: A landmark decision. *Alabama Disabilities Advocacy Program Newsletter*, 1-3.
- Cornell Law School. (n. d.). *U. S. Code collection*. available from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42/usc_sup_01_42_10_144.html
- Divi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06). *Policy manual*. available from <http://www1.dshs.wa.gov/ddd/policy.shtml>
- French, L. (1986). Treatment rights of the mentally retarded: The cost of refusal.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4(3), 315-325.
- Garritty v. Gallen, 522 F. Supp. 171 (D. NH 1981).

- Hayden, M. F. (1998). Civil rights litigation for 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A summary. *Mental Retardation*, 36(1), 75-83.
- Jackson v. Fort Stanton, 757 F. Supp. 1243 (D. NM 1990).
- Leicester, M., & Cooke, P. (2002). Rights not restrictions for learning disabled adults: A response to Spiecker and Steutel.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81-187.
- Mills v. Board of Education of District of Columbia, 348 F. Supp. 866 (D. DC 1972).
- New York State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Inc. v. Rockefeller, 357 F. Supp. 752 (E. D. NY 1973).
- Olmstead v. L. C. & E. W., 527 U. S. 581 (1999).
- 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 v. Halderman, 465 U. S. 89, 98 (1984).
- 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PARC) v.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334 F. Supp. 1257 (E. D. Penn. 1972).
- President's Committe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2003). *Mission*. from <http://www.acf.hhs.gov/programs/pcpid/index.html>
- Rosenthal, E., & Sundram, C. J. (2003). Recognizing existing rights and crafting new ones: Tools for drafting human rights instruments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 S. Herr, L. O. Gostin, & H. H. Koh (Eds.),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ifferent but equal* (pp. 467-50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 Slye, R. C. (2003). Recommendations for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NGOs. In S. S. Herr, L. O. Gostin, & H. H. Koh (Eds.),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ifferent but equal* (pp. 503–51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yatt v. Stickney, 325 F. Supp. 781, 784 (M. D. Ala. 1971).
- Yale Declaration. (2003). In S. S. Herr, L. O. Gostin, & H. H. Koh (Eds.),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ifferent but equal* (pp. 517–5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berg v. Romeo, 457 U. S. 307 (1982).

부록

부록 A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심층면접 지침

조사자 면접 원칙

- (a) 모든 질문은 알기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한다.
- (b) 모든 문항에 있어 당사자에게 질문을 우선적으로 한다.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기술한다. 보호자의 의견은 보충·첨부하는 형태로 한다.
- (c) 중복 사항을 모두 체크한다(예: 동일인에 의한 중복 가해와 여러 사람에 의한 1회나 그 이상의 가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은 묻지 않는다)

-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2. 몇 살입니까?
- 3.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시 단위로 기재한다)
- 4. 장애 등급은 몇 급입니까?
- 5.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예: 중학교 중퇴일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한다)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중 어떤 부분에서 침해를 당했는지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면접에 임한다)

재산권에 대한 질문

6. 정부보조금을 받았나요?
7.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면 누가 그 관리를 했나요?
8. 정부보조금을 어떻게(누구 뜻대로) 사용했나요?
9.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다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나요?
10.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11.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12. 명의도용 외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다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
나요?

신체자유권에 대한 질문

(신체자유권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방에 가둬 놓고 밥도 안 준다
거나,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뽀뽀하자고 하거나, 때리거나, 욕을 하거
나, 굶기는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

13. 여러 번 피해를 당하였나요?

14. 어디서 피해를 당하였나요?

15. 누가 당신을 괴롭혔나요?

16. 어떤 피해를 당하였나요?

노동권에 대한 질문

17.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직업의 유형을 기재한다)

18.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친척이 돈을 받고 팔았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강제로 끌고 갔다든지 등 일을 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다)

19.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일을 할 것인지, 돈은 얼마나 주는지 등에 대하여 들었나요? (일을 하기 전에 노동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다)

20. 얼마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21. 그 일을 강제로 시켰나요?

22. 강제로 본래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해야 했다면, 어떤 일을 했나요?

23.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24. 일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25. 일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후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었나요?

26.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퇴직 시 본인 의사 여부를 기재한다)

27.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았나요?

사건의 대응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

28.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29. 피해를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30. 피해를 당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31. 피해를 입은 후 얼마나 지나서 대응했습니까?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거나 알리는 등으로 피해가 드러난 시기를 기재한다)

32.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지원의 종류나 유형에 대하여 기재한다)

33.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34.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왔습니까?

35. 가해자와 분리 조치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 예 를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36. 당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37. 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후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부록 B

정신지체인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지침

현 상황의 파악과 문제의 제기

1. 정신지체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각자 위치에서 보고 느낀 점을 나눈다.
2.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유한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생애 주기별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한다.
3. 현 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각자 위치에서 진단해 본다.
4. 학대받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보도를 매스 미디어에서 보았을 텐데, 이런 학대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5. 극단적인 학대 상황은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지체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데, 그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가?
6. 정신지체인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에서 제2의 당사자라고 일컬어지는 부모들이 우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당사자 부모로서의 입장은 어떤가?

대안 제시

7. 시설과 가족 보호 중 어느 테두리에도 끼지 못하는 정신지체인이 많은 상황인데, 어떤 서비스와 정책이 필요한가?
8. 시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지체인이 살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9. 정신지체인 권리 옹호를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예: 단기적으로는 쉼터, 지원센터 등, 중기적으로는 가중 처벌, 소송 지원 등의 법적 지원)
10. 외국 사례의 공유